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심사제도 발전방안 연구

OSHRI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심사제도 발전방안 연구

조기홍·김현수·최아름·천지영·남해영·김태경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 출 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심사제도
발전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1 월

연구진

연구기관 :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연구책임자 : 조기홍 (수석연구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 : 김현수 (책임연구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 : 최아름 (선임연구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 : 천지영 (연구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 : 남해영 (선임차장,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연구보조원 : 김태경 (선임차장,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요약문

- 연구기간 2021년 08월 ~ 2021년 11월
- 핵심단어 비공개 승인, MSDS, 영업비밀, 대체명칭
- 연구과제명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심사제도 발전방안 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6272호, 2019.01.15)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21년 0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0년 MSDS 관련 연구에서 기업의 이해당사자 포럼을 통해 수입자 제출 및 대체자료 승인신청 관련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제도 시행 이후의 제도관련 의견 수렴은 진행된 바가 없었으며, MSDS 신뢰성 제고와 활용성 강화 등을 위해 포럼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승인제도의 안착 및 발전을 위하여 포럼을 통해 기업 및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관련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가)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심사제도 의견 수렴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심사제도 발전방안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안전보건공단, 국내·외 제조 및 수입업체, 전문가, 노·사 단체 등으로 구성하여 총 5회의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불특정다수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과 대한산업보건협회 홈페이지(kiha21.or.kr)를 통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였다.

나) 주요의견

(1) 경영계 의견

국내 제조자의 MSDS 제출 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LOC, Letter of confirmation)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제출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혼합물(mixture-in-mixture) 제조자들이 공급업체로부터 혼합물질 또는 단일물질 형태로 원료를 제공받을 때, 영업비밀이거나 미분류 물질의 정보를 알 수 없어서 영업비밀 신청이 어렵다.

연구개발의 경우, 최종단계까지 가지 않고 일회성 실험 후 폐기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승인절차로 인해 연구개발에 지장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명명법에 따르면 유사업계에서 유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포괄적이고 명확한 대체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2) 노동계 의견

노동자는 성분보다는 해당물질을 어떻게 취급해야하는 지 등의 정보 전달이 더 중요하므로 노동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본 제도의 도입 당시 상황과 현 시점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노조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전달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MSDS 작성 및 제출과 비공개 승인심사 제도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전문적이라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의 MSDS는 화학물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영업비밀은 기업의 중요한 정보이지만 유해물질을 숨긴다고 생각하게 된다.

(3) 전문가 의견

미분류 물질에 대한 확인은 국외제조자와 동일하게 국내제조자가 발행하는 LOC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분류 물질은 독성자료가 없을 뿐 유해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국내 LOC를 허용하게 된다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파악 및 관리가 어렵고 MSDS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다.

산안법 제112조에 전성분 작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 시행규칙에서 미분류 정보까지 작성하라는 것은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MSDS 비공개 승인 심사에서 모든 성분의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적정성 검토 시 모든 성분을 알아야 발암성 및 급성독성 해당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발암성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건강보호와 알 권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미분류 물질의 정보까지도 충분히 확보해야한다.

(4) 불특정 이해당사자 의견

경영계 의견과 유사하게 국내 LOC인정, 비공개 승인 심사 시 미분류 물질에 대한 정보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 주요쟁점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관련 국내 제조기업과 수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만 허용하고 있다.

국내 제조사의 경우 타 제조사로부터 화학물질을 양도받아 혼합물을 제조할 경우 MSDS 자료 확보는 가능하나 분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자료는 경우에 따라 확보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법 제110조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는 MSDS 작성은 가능하나 별도자료 제출을 할 수 없어 법을 이행하기 어렵다.

○ 개선방안

분류되지 않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국내 화학물질 제조기업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 제110조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여 양도하는 경우 분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라고 명확히 하거나,

국내 제조기업의 경우도 수입자와 같이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신청 시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함유량 및 신청여부 등에 대한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승인 대상은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대상인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이나, 시행규칙 제161조제2항 및 별지 제63호 서식에 따라 제품내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럴 경우,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LOC)를 받은 수입자 또는 국내 화학물질 제조업체로부터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받지 못한 기업은 영업 비밀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 개선방안

법 제110조 및 제112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신청은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만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시행규칙 및 별지 제63호 서식을 개정하여야 하며 법 제110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LOC)를 인정한다.

(3)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장에 게시·비치하여 노동자에게 알리도록 하되, 정부 제출은 면제했으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의 경우 현실적으로 영업비밀 승인 심사로 연구개발이 지연되거나 기업의 정보 유출 피해가 우려된다.

○ 개선방안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의 경우, 영업비밀 승인 심사를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라) 제언

첫째, 노동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화학 제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분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기보다는 제104조에 따른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를 강화할 필요 있다. 따라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3항에서는 “변경된 경우”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므로 화학물질 분류주기를 “2년 마다”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 대상물질을 국내에서 제공하려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다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에도 별도 제출을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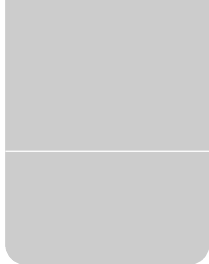
셋째,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작성 등을 포함한 비공개 승인절차로 인해 연구개발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의 경우, 일정 제조량 이하이거나 흙 후드 등의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를 한 실험실, 또는 용도 구분 등에 대한 기준에 따른 제외 기준을 설정하여 비공개 승인 심사를 일부 면제하는 개선안이 필요하다.

3. 연구 활용방안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관련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관련 개정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수석연구원 조기홍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평가1부 과장 정수진
 - ☎ 042) 869. 0357
 - E-mail star@kosha.or.kr



목 차

I. 서 론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표	5
II. 연구내용 및 방법	9
1. 연구내용 및 범위	9
2. 연구방법	9
1) 협력창구 구성·운영	9
2) 포럼 운영	12
III. 연구결과	17
1. 문헌조사	17
2. 포럼운영결과	25
1) 1차 포럼 결과	25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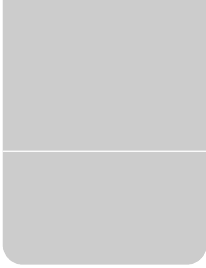
2) 2차 포럼 결과	38
3) 3차 포럼 결과	43
4) 4차 포럼 결과	48
5) 5차 포럼 결과	52
3. 불특정 이해당사자(온라인) 의견수렴 결과	56
1) MSDS 작성 및 제출관련 의견	56
2) 비공개 승인심사 관련 의견	59
3) 시스템 관련 의견	61
4) 기타 의견	62
IV. 결론 및 제언	67
1. 주요결과	67
1) 경영계 의견	67
2) 노동계	68
3) 전문가	68
2. 결론	69
1) 국내 제조기업과 수입자와의 형평성 문제(산안법 제110조 관련)	69
2) 비공개 승인신청 시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 명칭 및 함유량 작성 문제(산안법	

제112조 관련)	69
3)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의 정보유출 및 연구개발 지연문제	70
3. 제언	72
참고문헌	74
Abstract	75
부록	77

표 목차

〈표 Ⅰ-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주요 개정 사항	5
〈표 Ⅱ-1〉 불특정(불특정) 이해당사자 대상 의견수렴 과정	11
〈표 Ⅱ-2〉 포럼 개최 일시 · 장소 및 참석인원	12
〈표 Ⅲ-1〉 외국의 MSDS 영업비밀 제도 비교	17
〈표 Ⅲ-2〉 발제자 3의 주요의견	28
〈표 Ⅲ-3〉 다국적 기업의 MSDS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의견	29
〈표 Ⅲ-4〉 다국적 기업의 영업비밀 승인신청 관련 의견	32
〈표 Ⅲ-5〉 다국적 기업의 시스템 관련 의견	35
〈표 Ⅲ-6〉 다국적 기업의 기타 주요 의견	37
〈표 Ⅲ-7〉 2차 포럼 주요 논의사항	39
〈표 Ⅲ-8〉 국내 기업의 MSDS 작성 및 제출 관련 의견	40
〈표 Ⅲ-9〉 국내 기업의 비공개 승인 관련 의견	42
〈표 Ⅲ-10〉 국내 기업의 시스템 및 기타 의견	43
〈표 Ⅲ-11〉 MSDS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전문가 의견	46
〈표 Ⅲ-12〉 비공개 승인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	47
〈표 Ⅲ-13〉 전문가의 기타 주요 의견	48
〈표 Ⅲ-14〉 4차 포럼 주요 발제내용	49
〈표 Ⅲ-15〉 4차 포럼의 MSDS 작성 및 제출 관련 의견	50
〈표 Ⅲ-16〉 4차 포럼의 비공개 승인 관련 의견	51
〈표 Ⅲ-17〉 4차 포럼의 기타 의견	52

〈표 Ⅲ-18〉 MSDS 작성 및 제출관련 온라인 의견수렴결과	57
〈표 Ⅲ-19〉 비공개 승인심사 관련 의견수렴결과	59
〈표 Ⅲ-20〉 시스템 관련 의견수렴결과	61
〈표 Ⅳ-1〉 화학물질 분류주기에 대한 규정 신설(안)	72
〈표 Ⅳ-2〉 물질안전보건자료 별도제출 제외 관련 규정 신설(안)	73
〈표 Ⅳ-3〉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비공개 승인 심사 면제 규정 신설(안)	73



그림목차

[그림 Ⅲ-1] MSDS 개정사항 이행의 예상 어려움	22
[그림 Ⅲ-2] 비공개 승인제도 도입의 기대점	23
[그림 Ⅲ-3] MSDS 관련 개정내용의 시행에 따른 기업지원의 필요점 ..	24

I. 서론

.....

I. 서론

1. 연구배경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6272호, 2019.01.15)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이하 MSDS)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21년 0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8-66호)에서 MSDS제도 개정이유를 “생산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새로운 화학물질이 생산 공정에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국가가 관리하기 위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영업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등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이라고 공고하였다.

MSDS 제도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표 I-1).

- ① 대상화학물질 양도·제공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공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일부 관리의 사각지대(직접사용자 등)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제조·수입자로 작성·제공 대상자를 변경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사용자간의 유통이 아니라 정부(고용노동부장관)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② MSDS 비공개 정보 심사제도 : 기존의 자율적이고 임의적인 영업비밀 기재 방식에서 사전에 비공개 내용이 기준에 따라 적절한지 여부를 정부에서 심사하여 승인하는 방식으로 승인되지 않은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③ MSDS에 기재하는 구성성분의 범위가 기존에는 유해성·위험성 미분류 물질까지 구성성분에 기재(즉, 전 성분기재)하였으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구성성분만 기재. 단, 미분류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은 별도로 제출(또는 국외제조자의 경우 유해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하여야 함

MSDS 개정 시행 초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법적 해석 결과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Q&A 답변이 변경된 사례가 발생(2021.03.30.)한 경우도 있었으며, 화평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표 1의 일반적인 한계농도와 고용노동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6의 한계농도가 달라 혼합물 계산 시 어떤 한계농도를 적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도 발생하였다.

연구개발용 제품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9조(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MSDS 제출이 면제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2020년 MSDS 관련 연구에서 기업의 이해당사자 포럼 중 수입자 제출, 개정 시 재제출, 대체자료 승인 신청관련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있으나 실제 시행 이후의 제도관련 의견 수렴은 진행된 바 없었다.

따라서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승인제도의 안착 및 발전을 위해 기업 및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관련 제도의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 I-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주요 개정 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1.01.16 시행)
MSDS 제출	규제방식	사업장간 자율유통	정부제출/사업장제공
	작성주체	양도·제공자	제조·수입자 (국외제조자의 경우 선임가능)
	기재대상	구성성분 100%	유해성분 ¹⁾
	제출자료	-	- MSDS 16개 항목 - 미분류 화학물질 명칭·함유량 (또는 화학물질 확인서류 ²⁾)
비공개 승인 심사	규제방식	임의적용	정부사전승인(사업장신청)
	작성주체	양도·제공자	제조·수입자 (국외제조자의 경우 선임가능)
	기재대상	‘영업비밀’ 자율기재	대체명칭, 대체함유량
	제출자료		-MSDS 16개 항목 -미분류 화학물질 명칭·함유량 -비공개 입증자료 ³⁾ -대체자료 ⁴⁾ -비공개 화학물질 명칭·함유량,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등

1)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130호), 2) 화학물질 확인서류 : 유해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3) 비공개 입증자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 하는 자료, ① 비공지성 ② 비밀 관리성 ③ 경제적 유용성, 4) 대체자료 : 대체 명칭 및 함유량

2. 연구목표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승인제도 관련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승인제도의 이해당사자 그룹별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정책 방향 논의 및 운영상의 애로사항 조사하고, 이해당사자 포럼 운영,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개선방안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1) 협력창구 구성·운영

(1) 협력창구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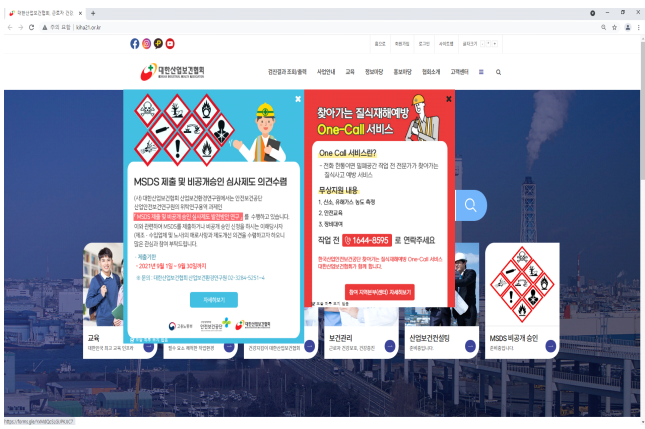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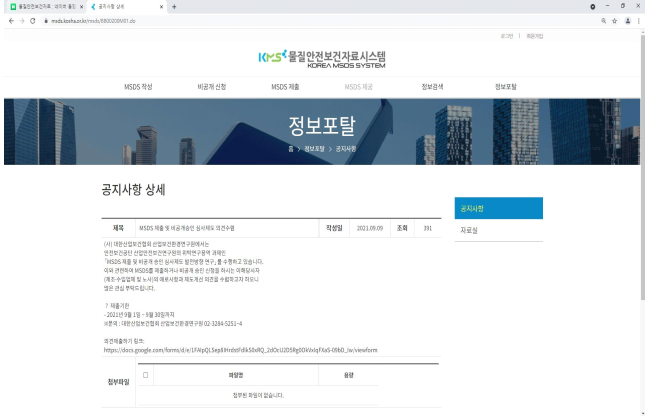
포럼을 진행하기 위하여 협력 창구를 연구진과 연구 상대역을 포함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협조로 선정한 국내 화학물질 제조 및 수업체, 유럽상공회의소와 미국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은 다국적 기업,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승인제도 관련 컨설팅 기관,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추천 기업체 그리고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2)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협력창구 구성원에게는 연구과제의 목적을 설명하고 포럼운영 시 의견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하였으며, 불특정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msds.kosha.or.kr)과 대한산업보건협회 홈페이지(<https://health.kiha21.or.kr>)를 통하

여 2021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의견 수렴과정을 진행하였다
(부록 4 참조).

〈표 II-1〉 불특정(불특정) 이해당사자 대상 의견수렴 과정

게시장소	내용
(사)대한산업보건협회 메인 홈페이지 (http://kiha21.or.kr/)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공지사항)	
월간 산업보건소식지(9월호)	

2) 포럼 운영

(1) 포럼 운영현황

포럼은 안전보건공단, 국내·외 제조 및 수입업체, 전문가, 노·사 단체 등을 대상으로 총 5회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비대면 회의(ZOOM 영상회의)와 대면 회의를 병행하여 운영하였다. 원활한 포럼의 진행과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참석대상별로 구분하여 운영하였고 포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은 5차 포럼을 제외한 4개 포럼에 모두 참석하였다. 자세한 포럼 개최 일시 및 참석인원 등은 <표 II-2>와 같다.

〈표 II-2〉 포럼 개최 일시 · 장소 및 참석인원

구 분	날짜 (시간)	운영방식 (장소)	참석 대상	총 참석인원
1차 포럼	2021.8.31.(화) (14:00 ~ 16:30)	비대면 회의 (ZOOM)	컨설팅 및 다국적 기업	18명
2차 포럼	2021.10.8.(금) (14:00 ~ 16:00)	비대면 회의 (ZOOM)	국내 기업	14명
3차 포럼	2021.10.20.(수) (15:00 ~ 17:00)	대면회의 (서울스퀘어)	전문가	10명
4차 포럼	2021.10.21.(목) (13:00 ~ 17:00)	대면 회의 (서울스퀘어)	컨설팅 및 다국적 기업	12명
5차 포럼	2021.10.29.(금) (10:00 ~ 12:00)	대면 회의 (글로탑)	노동계&기업체	13명

(2) 포럼 운영방식

포럼은 연구진이 선정한 주제에 따라 발제자로부터 받은 발표 자료를 참석자들에게 사전에 공유하여 검토한 후 포럼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전에 의견을 서면으로 받거나 포럼 당일 의견을 수렴하였다. 발제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정시간 동안 발표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 회별로 포럼 참석요청 공문과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및 연구 상대역(안전보건공단)에게 보고하였다.

Ⅲ. 연구결과

.....

Ⅲ. 연구결과

1. 문헌조사

- 주요 선진외국과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MSDS 영업비밀 제도 비교연구(원창덕 등, 2011)

〈표 Ⅲ-1〉 외국의 MSDS 영업비밀 제도 비교

구 분	EU	미국	일본	캐나다
MSDS 영업비밀 관련부처	유럽화학물질청 (ECHA)	산업안전보건청 (OSHA) 환경보호청(EPA)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보건부 작업장유해물질 정보시스템 (WHMIS)
영업비밀 주요 관련법령	EU REACH (EC No.1907/2006) 부속서II	CFR No.1910.1200 유해정보전달기준 (HCS)	노동안전위생법 노동성고시 60	유해물질정보 심사법 (HMIRA)
영업비밀 대상	화학물질 동질성	화학물질 동질성	화학물질의 성분 및 함유량	화학물질 동질성 Controlled product의 성분 및 농도 독성연구 제목
영업비밀 제외대상 물질	특정 조건하에 위험한 물질로 분류된 혼합물의 농도와 농도범위 표시	상세규정 없음	상세규정 없음	IDL(성분공개목록) 명칭 및 성분 명시
영업비밀 보호절차	영업비밀의 타당성 제시 상세규정 없음	영업비밀의 취지에 부합 상세규정 없음	영업비밀의 합리적인 사유 제시 상세규정 없음	HMIRC에 신청
영업비밀 공개대상	응급상황에 긴급 한 행동이 필수적 인 경우 공개	응급 시 의료전문가에게 공개 비응급 시 요청에 의해 노출 근로자 또는 지정대리인 에게 공개	응급상황 시에 응급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의료전문가와 노동성 감독관의 요청	응급상황 시에 응급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의료전문가 또는 정부기관에 공개

- 사업장 MSDS 영업비밀 적용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종한 등, 2011)
 - 석유화학제품제조, 도료(페인트 등)제조, 금속가공유제조, 세제제조, 기타제조 및 다국적 기업 등 73개 사업장 대한 ‘영업비밀’ 적용실태 분석결과, 총 MSDS의 수는 83,832종이었으며, 이 중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원료물질의 MSDS 수는 19,550종(23.3%)이었고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MSDS는 64,282종(76.7%)이었음. 총 MSDS의 수 중 ‘영업비밀’이 적용된 MSDS의 수는 38,151종(45.5%)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원료물질의 MSDS에 적용되어 있는 ‘영업비밀’은 4,788종(24.5%),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MSDS ‘영업비밀’ 적용은 33,363종(51.9%)으로 외부보다 자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영업비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GHS MSDS 이행관리 및 영업비밀 적용실태 조사 연구(이권섭 등, 2014)
 - 5개 화학제품 제조업종(도료 제품 또는 유지 가공 제품 제조업, 무기화학 제품 제조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유기화학 제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과 화학제품 수입업체를 대상 GHS MSDS에 대한 영업비밀의 기재 비율을 조사한 결과, 약 67.4%(단일물질: 9.0%, 혼합물질: 75.6%)의 GHS MSDS가 영업비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모 화학물질 제조사업장에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상 영업비밀 및 정보미공개에 관한 현황 및 특성분석(조민재, 2016)
 -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2차전지 등 IT관련 기타화학업종 계열사, 6개 사업장의 2,758종의 MSDS를 조사하여 구성성분과 함유량에서 영업비밀 등의 일부정보 미공개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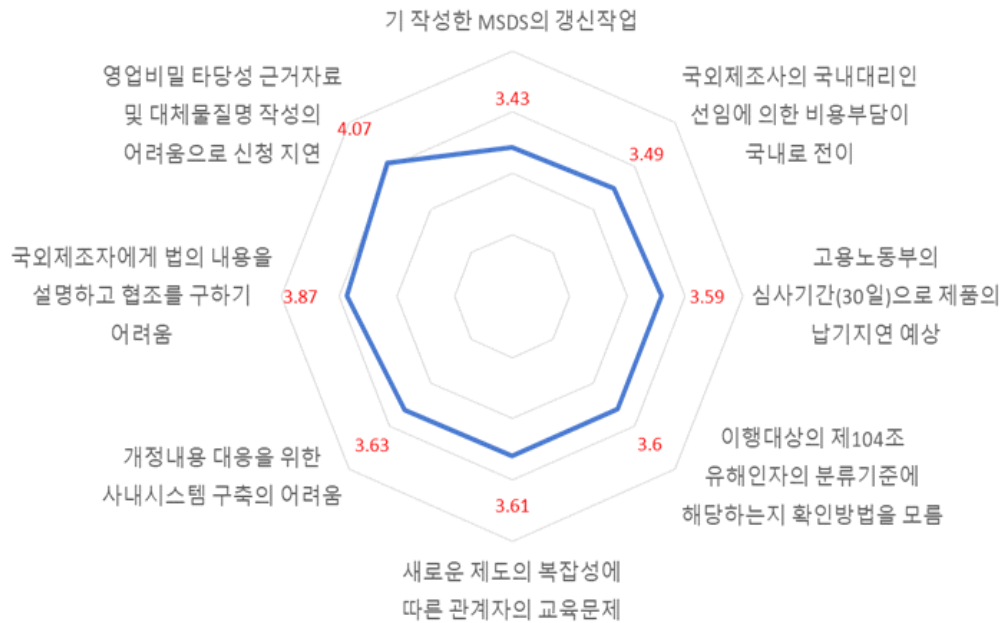
정보 미공개가 포함된 MSDS는 284종으로 약 10%였으며, 이 중에서 영업비밀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은 223종으로 약 8%였고 나머지 약 2%는 단순 미기재 또는 정보 없음 등으로 표기하였음

- MSDS 시스템 장기적 운영방안(로드맵) 마련 연구(김신범 등, 2020)
- MSDS 장기적 운영방안관련 포럼에서 기업 이해 당사자들의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심사제도에 대한 의견
- 동일제품의 수입자가 여러 명인 경우,
 - 대표 제출자가 동일제품 수입자 정보(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해당 제품 수입자들이 제출한 것으로 갈음해줄 것을 요청함
 - 대표 제출자가 제출하면 다른 수입자들은 MSDS의 번호만 제출하면 되도록 허용되어야 함
 - 한 수입자가 해외제조자의 MSDS를 제출했고, 다른 수입자들도 동일한 제품의 MSDS를 제출한 경우, MSDS 번호를 수입자가 다르더라도 제품명에 따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
 - 동일 수입 제품에 대하여 여러 수입자가 있는 경우, 최초 제출자가 제품연계 설정 시 연계 사업장에서는 제출하기를 누르면 업로드 되어있는 MSDS가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부여 혹은 “복사” 기능 부여
- 개정 시 재 제출에 대한 의견
 - 같은 제품에 대해 늘 동일한 MSDS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함
- 대체자료 승인 신청

- 영업기밀 신청 시 자료 보호 정보에 대한 관리 수준을 일반 정보와 차별화하여 관리가 필요함 (노동부 감독관 검열 시 자료보호 신청한 물질정보를 출력하여 유해 위험성 조사 신청인의 하위사용자에게 물질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있어 영업기밀 보호 신청을 위한 정보 제공 시 보호가 제대로 될지 심각히 우려됨)
 - 기업과 심사자의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자 동일한 물질이 여러 제품에 함유되어 있고 해당 제품들 내에서 모두 영업기밀 물질로 취급된다면, 제품명 리스트를 제출하여 한번의 영업기밀 승인 신청으로 관련제품군의 승인이 함께 완료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스템 구현검토 요청(한 물질이 50품목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의 방향이 불가능하다면 대체 자료 승인 신청도 Mass upload가 가능하도록 구현할 필요가 있음)
 - 이미 승인된 비공개신청 물질이 다른 제품에 동일하게 포함된 경우, 그 제품의 비공개 신청 시 해당 승인완료물질의 수수료는 제외 요청 (사유: 동일 물질의 중복 검토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 해외 제조자로부터 선임 받은 대리인
- 해외제조자로부터 선임 받은 대리인으로서 MSDS 제출 혹은 영업기밀 승인에 대한 업무를 진행할 때, MSDS 제출 시스템에서 선임 정보를 받은 후, 선임번호를 입력하여 별도의 회원가입을 진행하여 건전히 제출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임
 - 대리인으로 진행하는 사업자가 MSDS 제출시스템에서 아이디/PW 생성만 하였다면, 별도의 전권대리인 아이디 생성 없이 선임 받은 번호를 입력하여 단순하게 MSDS 제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입업체·유통업체 작성 MSDS의 신뢰성 개선 방안 연구(신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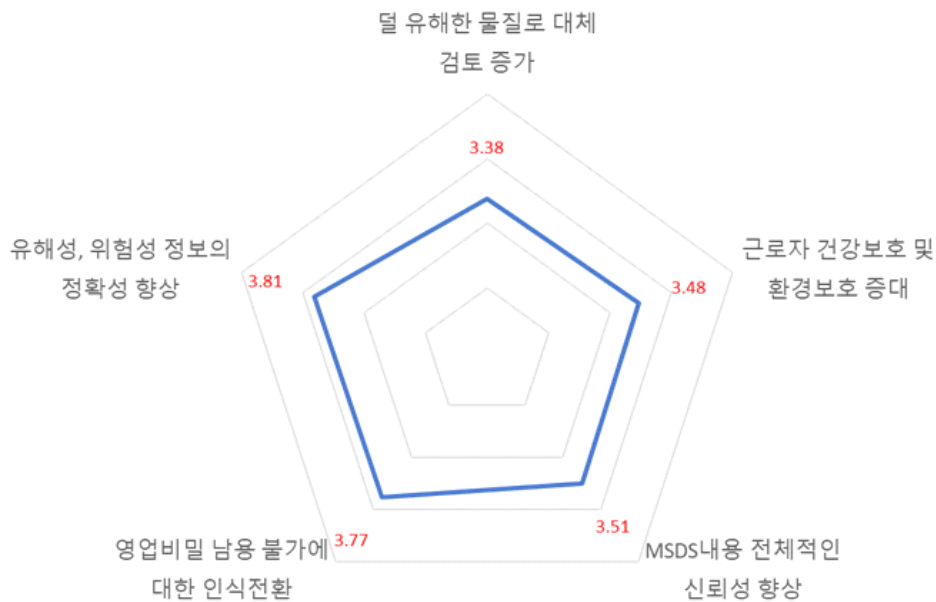
2020)

- 2019년 유해화학물질 수입업체, 유통업체 대상 MSDS관련 인식도 (5점 척도, 1점은 낮은, 5점은 높음) 설문조사
- MSDS 개정 내용의 이해 여부
 - 응답자 166명 중 알고 있다 76명(45.8%), 모른다 90명(54.2%)
- MSDS 개정사항 이행의 예상 어려움(평균점수)
 - 영업비밀 타당성 근거자료 및 대체물질명 작성의 어려움으로 신청 지연(4.07점)
 - 국외제조사에게 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어려움(3.87점)
 - 개정내용 대응을 위한 사내시스템 구축의 어려움(3.63점)
 - 새로운 제도의 복잡성에 따른 관계자의 교육문제(3.61점)
 - 이행대상의 제104조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방법을 모름(3.60점)
 - 고용노동부의 심사기간(30일)으로 제품의 납기지연 예상(3.59점)
 - 국외제조사의 국내대리인 선임에 의한 비용부담이 국내로 전이 (3.49점)
 - 기 작성한 MSDS의 갱신작업(3.43점)



[그림 Ⅲ-1] MSDS 개정사항 이행의 예상 어려움

- 비공개 승인제도 도입의 기대점(평균점수)
 - 유해성, 위험성 정보의 정확성 향상(3.81점)
 - 영업비밀 남용 불가에 대한 인식전환(3.77점)
 - MSDS내용 전체적인 신뢰성 향상(3.51점)
 - 근로자 건강보호 및 환경보호 증대(3.48점)
 -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 검토 증가(3.38점)



[그림 Ⅲ-2] 비공개 승인제도 도입의 기대점

- MSDS관련 개정내용의 시행에 따른 기업지원의 필요점(평균점수)
 - MSDS대상물질 확인 가능 시스템 제공(4.04점)
 - 제도설명 및 대응실무에 대한 정기적 교육시행(3.95점)
 - 중소기업 밀착형 실무대응 교육지원(3.90점)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영상교육자료(3.72점)



[그림 Ⅲ-3] MSDS 관련 개정내용의 시행에 따른 기업지원의 필요점

2. 포럼운영결과(부록 5 참조)

1) 1차 포럼 결과

(1) 발제내용

1차 포럼에서는 총 3명의 발제자가 MSDS 작성 및 제출과 비공개 승인 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제안사항에 대해 발제를 준비하였다.

가) 발제 1 :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심사제도 발전방안

1 발제자는 수동적인 화학물질관리가 습관화 되어 있는 기업의 실태와 MSDS가 단순히 지도·점검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MSDS 품질향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부처 간 중복규제로 인한 인력 및 시간적인 낭비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다음의 4가지를 제안하였다.

- ① MSDS 작성방법, 사업장 안전관리 등에 관한 다양한 교육 제공
- ② 사업장 관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도, 점검, 감독의 축소
- ③ 현행 법규 운영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분석
- ④ 관련 법규 체계의 재검토

영업비밀과 관련해서는 구성성분별 대체명칭이 적절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전성분 자료를 확보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요구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해 2가지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 ①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따른 제한함량 이상의 물질에 대한 구성성분 정보만 요구
- ② 제품별 대체명칭 심사를 물질별 대체명칭 심사로 변경

나) 발제 2 : 비공개 승인 변경/환불규정 이슈사항

2 발제자는 비공개 승인심사와 관련하여 4가지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발제하였다.

▪ 비공개 승인변경 및 환불

비공개 승인과 관련하여 변경사항 발생 시, 기존 승인 건에 대한 수정이 불가능하며, 환불 규정의 부재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야기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동일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별 검토 일정 및 기준이 달라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다음의 2가지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 ① 비공개 승인에 대한 변경 규정 및 마련
- ② 환불 규정 마련(승인 전 취소되는 경우)

▪ 대체물질명

화평법의 명명법을 사용하여 제품의 MSDS에 대체물질명을 표기하게 될 경우, 하위 사용자 또는 다수로부터 유추가 가능하여 산업계의 영업비밀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총칭명에 대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 국외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제품의 비공개 승인

국외 생산자가 영업비밀로 인해 원료 공급업체로부터 전성분을 받지 못하면, 국내 업체 역시 국외 생산자로부터 제품을 수입할 경우, 전성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국내 영업비밀 승인신청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1 발제자와 동일하게 전성분 확보 관련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 연구개발 물질의 비공개 승인

영업비밀 성분이 최종 수출제품에 포함되어 간접적으로 한국에 수출되는 경우, 해외생산자도 원료의 영업비밀 성분을 알 수 없어 비공개 승인이 불가능하며, 비공개 승인을 위해서는 원료 공급업체가 영업비밀 성분을 제공하는 등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소량 샘플의 경우에는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따른 개선사항으로 연구개발용 소량 샘플 (100kg 이하)의 경우에는 국내로의 빠른 샘플 수급 및 신속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MSDS 제출과 동일하게 비공개 승인에 대한 연구개발 면제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 발제 3 : MSDS 제출·비공개 승인 대응 및 개선방안

3 발제자는 MSDS 제출의무와 비공개 승인,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알 권리 확대보장과 관련한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질의형식으로 발제하였다(표 III-2).

〈표 III-2〉 발제자 3의 주요의견

구분	개선방향
MSDS 제출	• MSDS 제출의 목적이 무엇인가? • (만약 그 목적이 MSDS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면) 제출된 MSDS에 대한 적정성평가 등 절차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가? • MSDS 제출시 발급되는 MSDS 번호의 의미는 무엇인가? • 제출된 MSDS에 대한 정보공개 등 활용방안은 무엇인가? • 톤수별 MSDS 제출의무의 유예기간이 현장에서 작동하는가? • 궁극적으로 MSDS 제출의무가 MSDS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가? • 화학사고시, 해당 MSDS가 공단에 기 제출된 경우, 유해성 및 위험성 정보의 오류에 대해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가? •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을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가? • 제품 내 MSDS에 적힌 화학물질 외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화학물질 확인서류로서 국외제조사로부터 확인받은 화학물질 관련 확인 서류(Letter of confirmation, LOC)의 한계성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 복잡한 공급망 내의 정보전달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이 있는가?
영업비밀 승인신청	• MSDS 제출의무가 궁극적으로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비공개 심의제도는 정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법적 철학이 충돌하는 것은 아닌가? • 캐나다와 유럽의 정보보호 심의제도의 실익이 검증된 제도인가? • 비공개 심의제도 설계 시 연간 심의신청 건수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가? 만약 예상건수 보다 저조한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타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는가? • 타 부처 제도에서 정보공개 한계성을 극복할 만한 성과를 얻고 있는가? • 타 부처의 정보공개 제도와 중복성은 없는가?
근로자 및 지역주민 알 권리 확대보장	• 비공개 심의제도를 거치지 않는 물질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정보공개 내지 정보제공이 전혀 가능하지 않는 구조인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는 무엇인가? • 타 부처의 법제도를 통해 확보된 신뢰성 높은 정보와의 연계를 통한 알 권리 확대보장에 시너지를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

(2) 참석자 의견 및 토론결과

1차 포럼 참석자의 주요 의견을 MSDS 작성 및 제출 부분, 영업비밀 승인신청, 시스템 관련사항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III-3~6).

〈표 III-3〉 다국적 기업의 MSDS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의견

구분	문제점 및 현황	개선방안/ 제안사항
간접수입 LOC 인정범위	• 국외에서 국외 거래 시, MSDS를 제공할 뿐 Non GHS성분에 대한 LOC제공하지 않음	• 원료에 대한 Non GHS에 대한 증거 자료가 없더라도 원료의 MSDS가 확보된 경우, 산안법 상 LOC가 작성될 수 있도록 인정되어야 함
	• 각 국가별로 정해진 규정이나 법에 따라 MSDS가 작성되고 있어 고용노동부 2020-130 기준에 따라 2,3번 항목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국내법에 맞춰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음	• 실현이 불가능한 부분을 고려하여 인정범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MSDS 작성 및 제출대상	• 취급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완제품을 취급할 경우에는 작성 및 제출의무 제외인데, 그 화학물질의 범위가 모호함	• 완제품은 GHS분류기준 적용이 어려우므로 MSDS 작성 및 제출 비대상으로 고려 • MSDS 작성·제출의 의무에 관한 명확한 해설서나 가이드 필요
위/수탁 제조방식	• 위/수탁 제조의 경우, 수탁제조자가 MSDS 제출, 영업비밀 신청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구성성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탁제조자가 알고 있음)	• 제조자의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하여 제조 위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위/수탁 제조자 상관없이 누구나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신청이 가능하도록 검토 필요

MSDS 제출 유예기간	• 톤수별 제출의무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국제적인 timeline에 맞지 않고 실제로 톤수와 무관하게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의 혼란 가중	• 톤수별 유예기간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국제적인 화학물질관리의 timeline과 조화되는지 검토 필요
	• 원료 공급사의 수입량과 최종 사용자의 생산량이 상이한 경우 유예기간이 무의미함	• 유예기간을 수입량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함
성분이 공개되지 않은 원료를 함유하는 신규제품 의 MSDS+M SDS 제출번호 전달	• 현재 신규로 수입하고자 하는 화학제품(제품 A)에 원료로 사용되어 함유된 화학제품 (단일 물질 혹은 혼합물 형태의 '제품 B')이 있는 경우 제품 B의 전성분정보가 없다면, 제품 A의 MSDS 제출 등이 불가능하여 제품 A의 국내 수입이 불가능하여 현재 업계에서는 신규 원료를 함유하는 제품개발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며, 이로 인해 영업활동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영문 MSDS를 통해서도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며, 원료(제품 B)공급사들이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 A의 제조자에게 모든 성분을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내에는 성분정보가 아닌 해당 원료의 영문 MSDS를 제출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의 전향적 제도 개선이 필요
MSDS 제출관련 확인서류 LOC 작성	• 국외 제조자의 내부 직원으로서, LOC의 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이라면 서명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국내직원은 인정되지 않음	• 내부 절차에 따라 성분을 확인하고 본사를 대신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LOC 서명이 가능하도록 LOC 작성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및 안내 필요
LOC 제출 시 확인내용	• 산안법 110조 2항 2호에 따라 미공개 성분에 대한 LOC 제출시 104조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GHS 분류기준에 해당하나 Cut-off 미만으로 공개하지 않는 성분 비공개에 대한 내용을 커버하지 않음	• 104조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의미가 한계농도 이상으로 공개해야 하는 물질이 없음의 의미로 해석하여 줄 것을 요청함

OR선임신고 증 사본제공 (시행규칙 제166조5항)	• MSDS를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선임신고증 사본을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함	• 시행규칙 제166조5항 삭제
OR에 의한 정보제출 (산안법 제113조)	• 선임 서식 자체에 국외 제조자의 서명이 들어가도록 되어있고 첨부 서류에도 선임 계약서가 들어가므로 제조사의 서명까지 기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 제출하는 자의 서명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음
	• 선임받은 물질 또는 제품에 대해서만 MSDS를 작성하지만 현재 서식에는 이러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외 제조자가 수출한 모든 제품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선임 서식 내 선임물질 또는 선임 제품에 대한 명시와 법적관리에 대한 범위를 제한
	• OR은 수입자 정보만 파악할 수 있으며, 수입자의 판매처까지 파악하기는 어렵고 구매자도 OR 정보만 기재된 경우에 수입자 정보와 상이하여 혼란 우려	• MSDS 작성 및 제출 시 공급자 정보 기재
대체자료 의 정보 표시방법	• 현행기준으로 MSDS 3번 항목에 영업비밀에 대한 대체자료 기재 승인 정보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4개 정보(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외에도 추가로 2개 정보를(승인번호, 유효기간) 표시해야 함. 이렇게 되면 3번 항목에 대한 1개 정보당 table 내에서의 폭이 줄어들어 가독성도 떨어지고, MSDS 제작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비용이 소요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음	• 6개 정보를 한 번에 표시하는 현행기준 외에 추가 사항으로 일반적인 4개 정보를 제공하면서 (4개 정보의 어느 항목에라도 “영업비밀”이라는 표시를 함) 추가된 2개 정보인 ‘승인번호와 유효기간’은 16번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16 번 항목에는 “화학물질명(총칭명) - 대체자료 승인번호 - 유효기간” 형태 등으로 기입) 허용해줄 것을 건의함

〈표 III-4〉 다국적 기업의 영업비밀 승인신청 관련 의견

구분	문제점 및 현황	개선방안/ 제안사항
간접수입 에 관한 영업비밀 신청	• 국외(원료업체)에서 기업비밀로 가려져 있는 경우, 국내법 적용으로 산안법에 맞춰 영업비밀 승인신청을 요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 국외 기업으로부터 전달받은 MSDS를 첨부하여 영업비밀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 요청함 • 원료업체 MSDS에 작성된 대체명칭을 그대로 자사제품의 MSDS에 동일하게 기입하고, 당사 MSDS와 원료업체 MSDS를 제출하여 신고가능
화평법 상 신규물질	• 화평법상 신규물질로 등록된 경우, 산안법에 따라 다시 영업비밀 승인신청을 해야함	•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양 부처 간 협의로 법적인 간소화 절차 필요 • 화평법에 의해 승인받은 대체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산안법상 영업비밀 승인 생략할수 있도록 함 • 신고 등의 형태로 승인번호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함
R&D 영업비밀 심사 기준 및 기간	• R&D 영업비밀 신청 시, MSDS의 완전성, 분류의 정확성은 너무 세세하게 지적하여 심사 기한이 상당히 지연됨 (MSDS 자체의 적정성 심사로 심사기간이 지연되고 있음)	• R&D 영업비밀 신청 시 신청한 물질과 그 총칭명의 적정성만 리뷰하여 신속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을 고려하여 법으로 정한 최대 기간보다 더 빨리 비공개 심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함 • MSDS의 완전성 심사는 Commercial 단계에서 제출된 MSDS에 대해서 진행할 것을 요청함. 비공개심사는 비공개가 적정하냐 아니냐 하는 심사이며MSDS의 완전성 심사는 불필요함 요구라고 생각됨
소량 샘플 영업비밀	• 연구개발용 샘플의 경우, 일회성 실험 후 폐기되는 경우가	• 소량의 연구개발용 샘플(100kg 이하)의 경우, 영업비밀 승인에

승인제외	많은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승인에 대한 절차로 인해 신규물질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대해 면제 필요 • 면제가 어려울 경우, 연구개발용 샘플은 영업비밀 승인물질의 수입/제조 이후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연구개발 제품/샘플을 빠르게 수입/제조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단순신고 등으로 간소화 ex) 연구개발용 샘플,제품내 영업비밀 승인은 제조/수입 후 6개월 이내 승인 또는 1개월 이내 신청 • 면제가 어려울 경우, 상업용 제품의 MSDS 심사와 차등을 두어 비공개 자체의 적성성 및 총칭명의 적정성 만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있음 • 면제가 어려울 경우, MSDS 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신고(MSDS 시스템 업로딩) 정도로 대체할 것을 요청함
대체물질 총칭명	• 상세한 대체물질 총칭명 규정으로 인해 첨단물질 도입이 지연되거나, 다른업체에서 유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업비밀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어 회사 기밀유지에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으며, 심지어 한국으로의 수입이나 샘플수입의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막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다른 나라 수준으로 완화하여 영업비밀 보호 및 R&D 촉진 필요 • 명명법(Nomenclature) 또는 일반명칭(generic name)으로도 대체물질 승인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적완화 필요
비공개 승인 신청 및 변경	• 현재, 신규로 비공개 신청하거나 연장신청만 될 수 있어 동일 물질의 중복 검토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비효율적인 기업의 업무 발생	• 승인이 완료된 비공개 물질로 다른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기존의 승인번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동일물질 비공개 신청 시 간소화 제출 필요) • 화평법에서도 물질 등록 후,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가 있듯이, 비공개 승인 신청 철회 및 유해성 정보 부정 등의 정보변경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시리즈 제품의	• 동일 용도/타입의 한가지 제품이 다양한 색상으로 판매되는	• 동일 용도/타입의 제품에 대한 최초 대체자료 심사 신청에서

대체자료 연계	(color series) 제품에 공통으로 사용된 1개의 동일한 영업비밀 성분이 있는 경우, 제품별로 심사를 신청하다보니 중복신청으로 인한 행정소실 낭비와 기업의 과중한 부담발생	color series 제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으면, 이후 동일한 용도/타입의 color series 제품들은 대체자료 승인번호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인정자료 범위	• 해외 MSDS 유해성 분류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미분류로 2항 및 3항에 유해성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한국 시장에서는 유해성을 감추어 화학물질을 판매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해외 MSDS 유해성 분류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미분류로 2항 및 3항에 유해성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과학적으로 예측된 자료 등도 인정해주길 요청함
국내 제조자의 MSDS 영업비밀 신청 (mix-in -mix)	• 영업비밀 신청 시 신청하고자 하는 물질 이외에 전성분을 제출해야하나, 원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제조자는 원료의 전성분에 대해 알 수 없음	• 국내 제조자가 영업비밀을 신청할 경우 전성분이 아닌 영업비밀 대상 물질만 제출하도록 개선요청
연구개발용 제품의 MSDS 제출 면제 시 입증서류 서식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9조(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해당되는 경우 MSDS 제출이 면제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가 명시되어 있지않음	• 해당 고시 상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해당된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자료 또는 서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규정을 고시화 했으면 함 • 고시 제2020-130호 별표 7의 내용을 포함한 영업비밀 입증자료 서식 작성
영업비밀 입증자료 (경제적 유용성) (고용노동 부 고시 제2020- 130호 별표 7)	• 영업비밀 신청 시 경제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요구되나, 예상판매량 및 재무적인 가치 등의 자료제출은 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접근이 제한적이고 부담이 큼	• 화학물질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경쟁우위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해당항목을 제외하거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필요
영업비밀 심사의	• 심사과정에서 주로 요구되는 보완사항은 영업비밀 성분 외의	• 영업비밀 성분의 영업비밀 적정성에 초점을 둔 심사를

보완요청	식별자료, MSDS의 가타항목 추가 정보요청 등과 같이 MSDS 자체의 적정성 평가 내용이 요구되며, 최초로 요청했던 보완사항으로 제출하면 새로운 보완사항이 추가적으로 요청되어 승인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수입.제조 지연으로 연결됨	요청하며, 최초 보완요청 시 가능한 한 모든 보완 내용이 한번에 전달되어 추가 보완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필요
------	--	---

〈표 III-5〉 다국적 기업의 시스템 관련 의견

구분	문제점	개선방향
로그인시 복잡한 절차	• 마스터 로그인시 ID/PW 입력 후 공인인증서, 휴대폰/이메일 인증, 3단계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므로 번거로움	• 공동인증서 1회인증, 로그인 정보 저장, ID/PW만으로 로그인 가능하도록 개선
수수료 지불 방식	• 영업비밀의 신청 수수료 지불방식은 통장입금만 허용하고 있어서 기업에서 직접 지불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상당히 소요됨 • 대게 담당자가 먼저 지불하고, 기관에서 재입금하는 2중적인 고충이 있음	• 통장 입금 방식뿐 아니라 카드 결제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음
MSDS 연계 시스템	• 여러 제품의 MSDS를 제출할 때, 개별로 입력하고 제출해야함	• mass uploading을 통한 제출이 되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음
수정사항	• 최종제출 후에 날짜 및 오타 등 단순 수정이 있을 경우 처음부터 다시 제출 해야 됨	• 변경제출 대상항목 이외 항목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면 좋겠음
	• 기업비밀 승인 신청 이후 동일제품에 제품명이 추가된 경우, 승인번호 사용 불가	• 추가된 제품명을 MSDS 시스템이 추가하여 승인받은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함
MSDS 제출번호	• 원료제품 구입할 때 업체에 LOC 전달하지 않고 MSDS 제출번호로	• 원료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MSDS 번호를 입력할 수

전달	같은하여 전달해줄 경우, 성분란의 해당 MSDS 번호 및 원료제품명을 시스템에 제출하여 진행했으나 현재 불가능	있도록 MSDS 번호 및 원료 제품명 입력란을 활성화 하는 것을 요청
MSDS 중복제출	수입자로서 MSDS 제출 시 영업 조건이 바뀌어 OR로서 동일한 MSDS를 제출할 경우 기존 제출번호 사용이 어려움	제출자 및 제품이 동일하다면, 기존 제출번호 사용이 허용되도록 요청
MSDS 제출시 국외제조사 정보 및 수입(제조)국 정보기입	- 수입의 경우 국외제조사 정보란의 수입국(제조국)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종 제품의 제조/생산국을 기입해야 하는 것인지 수입되는 제품의 직전 수입국을 기입하는 것인지 불분명함 - 제품의 복잡한 공급망으로 인하여 다양한 수입형태가 발생하며 관련정보의 관리에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요구	국외제조사 정보 기입 여부에 따라 MSDS 제출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출 양식에서 삭제 요청
MSDS volume checking	MSDS 를 개정사유로 업로딩 하는 경우, 톤수를 표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	MSDS 시스템에 개정사유로 업로딩 하는 경우, 톤수 표기 사항을 inactive 하도록 요청함
파일첨부 방식	현재 LOC 는 파일첨부 시 drag and drop 방식 가능하나 MSDS 첨부시는 경로 검색 형태로만 첨부 가능	MSDS 제출 시 LOC 외에 첨부 MSDS 도 drag and drop 방식으로 파일 첨부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함
MSDS 제출 결과 통보 관련	작성한 ID 에 대해서만 제출결과 통보 버튼이 활성화	해당 사업장의 모든 ID 에 대해서, 혹은 최소 관리자 ID 에서는 통보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
MSDS 제공	MSDS 제공 기능은 현재 준비중으로만 표기되어 비활성화 형태	MSDS 제공 기능의 조속한 오픈을 요청함

부가기능	• 검색 기능: 번호로 MSDS 검색할 때, 찾을 수 있는 검색 기능이 없어 물질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림	• 검색 기능이 추가되어 물질을 찾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음
	• 출력 기능: 작성중인 서류만 출력이 가능하고, 최종 제출한 후에는 출력이 불가함	• 최종 제출 후에도 확인 서류 출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적인 개선 요청
	• 임시 저장 기능: 중간에 임시 저장할 경우 작성한 정보가 모두 사라짐	• 완전한 MSDS 제출을 위해 임시저장 기능이 추가되었음 좋겠음

〈표 Ⅲ-6〉 다국적 기업의 기타 주요 의견

- 노동계와 산업계의 입장차이가 굉장히 크며, 노동자의 안전문제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함
- 기업 뿐 아니라 실제 여러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야하며,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과거 연구스토리를 참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나아갈 발전방향을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대기업, 외국계 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과 달리, MSDS 제출을 한 번도 작성하지 않는 기업도 존재함으로써 MSDS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에 기업 간 극과 극으로 나뉘질 수도 있음
- 적정성 심사기준이 담당자마다 다르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심사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업체와 공유가 되면 좋을듯함
- 공단을 통해 MSDS 등록을 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제도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며, 어떤 방향이든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성분근거자료가 어느 쪽이던지 확보한 상태여야 한다고 생각함
- 산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오픈하고 정부가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
- 제품에 대한 MSDS를 받기 때문에 유럽처럼 물질에 대한 분류표시를 신고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 공단이 수많은 MSDS를 받게 되면 의미 있는 결과를 추출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전반적으로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샘플수입, 신규화학물질제도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야함

2) 2차 포럼 결과

(1) 발제내용

2차 포럼은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차 포럼과 온라인 의견 수렴에서 나온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및 법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에 대해 연구 책임자가 발제하였다.

가) 미분류 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별도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MSDS 작성 및 제출 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하 ‘MSDS 대상물질’이라 한다)의 명칭 및 함유량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이하 ‘미분류 물질’이라 한다)의 명칭 및 함유량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나, 기업들은 비유해성,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화학물질의 전성분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MSDS 제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미분류 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별도제출과 관련하여 국외 제조자로부터 수입하려는 자는 국외 제조자로부터 받은 LOC를 제출할 수 있으나 국내 제조자로부터 유통된 경우에는 LOC 인정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중간제품 제조자가 원료 제조자보다 유예기간이 짧은 경우가 발생하는 등 공급자와 하위 사용자 간 유예기간이 다를 경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워 MSDS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나) 비공개 승인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MSDS 내에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

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으로 적을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수입제품의 경우, MSDS 제출 시에는 해외 제조사가 발행한 LOC의 제출이 가능하나 비공개 승인 신청 시에는 LOC 제출이 불가하다.

또한, 현재 활용되고 있는 대체물질명은 경쟁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대체물질명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연구개발용 소량샘플(100kg 이하)에 대한 심의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처음 입법예고처럼 소량샘플(100kg 이하)에 대한 비공개 승인 면제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따라서 2차 포럼에서는 LOC, 대체물질명, R&D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표 III-7).

〈표 III-7〉 2차 포럼 주요 논의사항

구분	논의사항
MSDS 작성 및 제출	• 국내 제조자가 발행하는 LOC 인정
비공개 승인	• MSDS 제출과 동일하게 미분류 물질에 대한 대체서류로 LOC 인정 • 대체물질명 • 연구개발용 제품의 심의 면제

(2) 참석자 의견 및 토론결과

국내 기업은 공통적으로 MSDS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비유해성,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물질정보를 받는 것에 한계가 있어 미분류 화학물질의 전성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국외제조자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LOC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기존 생산된 제품의 유효기간이 차등 적용되어 중간 가공업체의 경

우에는 공급사가 유예를 해버리면 중간에서 MSDS 작성 및 제출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으며, 기타 내용은 <표 Ⅲ-8>과 같다.

〈표 Ⅲ-8〉 국내 기업의 MSDS 작성 및 제출 관련 의견

구분	내용
유예기간	• 혼합물 제조 시, 일반 화학물질과 혼합물의 유예기간이 동일하여 화학물질 수입자로부터 물질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이로 인해 MSDS 작성을 할 수 없는 문제발생
	• 기존 생산된 제품의 유예기간이 차등 적용되어 중간가공업체의 경우에는 공급사가 유예를 해버리면 중간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원청을 통해 공급사에 요청)
	• 제조자는 제조된 물질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MSDS 제출요청을 받지만 유예기간이 있어 바로 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순 혼합해서 하는 업체들은 제조자가 제출한 단일물질의 MSDS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은 어떨지?
LOC	• 근본적으로 화학물질 정보 제공 자체를 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지금은 LOC 조차도 제공받기 어려움 • LOC 양식을 화관법, 화평법과 동일하게 만들거나 통합하여 하나의 양식으로 만들어서 환경부나 노동부 어디에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자료 받는 것에 한계가 있어 미분류 화학물질의 전성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국외제조자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LOC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듯함
제출의 간소화	• 사용자 하여금 물질의 유해성이나 취급 시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것이 메인이지 모든 성분의 함량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공단 제출 시 성분확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제출과정은 간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물질정보 미제공	• 물질정보 미 제공 사례 사례 1 : 유예기간이 되지 않아 제공해 주지 않음 사례 2 : 제공된 자료로 물질을 카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제공해주지 않음 사례 3 : 공급업체 자체가 물질정보가 없어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함 • 전성분(1% 이상 등) 기입으로 인해 드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다 합리적인 방안 도출필요
화학물질 분류기준	• 가장 기본적인유해 위험성 정보의 기준인 11번(독성에 관한 정보), 12번(환경 유해성 정보)인데, 이 독성정보에 대한 GHS 분류기준을 적용할 때 독성 값에 부등호 기호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법이나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즉, LC50이나 LD50 값이 부등호로 표현되는 경우 MSDS에서 독성을 어떻게 반영해야하는지 감독관이나 공단 직원의 견해에 따라서 차이 발생

비공개 승인과 관련해서는 다국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업계의 입장에서 유추가 가능한 현재 대체물질명을 문제로 보고 있었으며, 포괄적이면서도 명확하게 대체물질명을 지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연구개발의 경우, 최종단계까지 가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제를 해주되, 면제조건을 샘플의 양으로 정하기에는 케이스가 다양하므로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방향으로 설정해야한다고 하였다 (표 III-9).

〈표 III-9〉 국내 기업의 비공개 승인 관련 의견

구 분	내용
제외물질 기준	• 비공개 신청을 할 수 없는 제외물질에 대한 기준 모호함 • 함유량 미만의 유독물질에 대한 비공개 승인 신청의 불가 • 화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함유량 기준도 산안법에 반영되었으면 함 • 유독물질이 아닌 미량의 성분에 대해서는 허용범위를 완화되어야 함
영업비밀 입증의 타당성	• 영업비밀 입증에 대한 기준이 법에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영업비밀 입증부분 때문에 심의기간이 매우 오래 소요됨
대체물질명	• 제품의 화학물질명 순서대로 작성해야만 승인이 나는데, 비슷한 업계의 입장에서 유추가 가능하므로 포괄적이고 명확하게 대체명을 지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 필요 • generic name을 가장 선호함
mixture-in-mixture	• 혼합물 제조자들이 공급업체로부터 혼합물질 또는 단일물질 형태로 원료를 제공받을 때, 영업비밀이거나 미분류 물질의 정보를 알 수 없어서 영업비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R&D	• 연구개발의 경우 최종단계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면제를 해주는 것이 좋다하고 생각함 • 케이스별로 샘플량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해야함 • 제조자 입장에서는 화평법에 따른 연구개발 면제 조건에 따라 자료제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MSDS 영업비밀 승인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됨

물질안전정보시스템의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로그인 계정의 한계를 지적하였으며, 기타의견은 <표 III-10>과 같다.

<표 III-10> 국내 기업의 시스템 및 기타 의견

구 분	내용
시스템	로그인 한계 : 최초 로그인 계정이 아니면 정보를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기타	- 보통 혼합물 제조자는 생산자로서, 화학물질 확인의 대상은 제조자와 수입자이므로 생산자(혼합물 제조자)는 정보획득이 가장 어려운 실정이며, 제조자, 생산자, 수입자의 용어정리를 명확히 한 다음 의견수렴을 해야 함 - MSDS 제출제도와 관련하여 유럽에서는 공급망의 상단에서 제출 시에 받은 UFI코드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그 코드를 제출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외국의 사례, 산업용 이전에 소비자용 제품에 대한 대응방안등을 참조하여 제도 개선 의견 도출 - 제도 도입 초기에 리뷰했던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리뷰하여 미분류 성분들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제출을 하고 있는지, 왜 제품단위로 신청할 수 밖에 없었는지 확인 필요 - CLP에서 피부감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총칭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고시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없다는 점과, 제조와 생산의 기간 차이를 준 부분 등을 검토하여 적용해주길 바람

3) 3차 포럼 결과

(1) 발제 내용

3차 포럼에서는 1차와 2차 포럼에서 나온 주요 문제점을 중심으로 전

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연구 책임자가 발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MSDS 제출 유예기간 합리화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54호(MSDS 작성 및 제출 등 유예기간 합리화) 시행규칙 변경(안)에 따라 중간제품 제조자가 원료 제조자보다 유예기간이 짧은 경우가 발생하여 중간제품 제조자의 유예기간이 변경되었으나 변경되는 시행규칙의 내용이 국내 사업장에만 특례를 받는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부록 1-3 참조).

나) MSDS 제출 시 미분류 물질에 대한 확인서류(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2항제2호)

미분류 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별도 제출과 관련하여 국외 제조자로부터 수입하려는 자는 국외 제조자로부터 받은 LOC를 제출할 수 있으나 국내 제조자로부터 유통된 경우에는 LOC 인정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 ① 영업비밀 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원료로 국내에서 혼합물을 제조할 경우, 원료의 영업비밀 정보를 알 수 없어 MSDS의 제출이 불가함
- ② 국외제조자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수입자가 미분류 물질에 대해 LOC를 제출하여도 단순 혼합해 다른 사업장으로 제공하게 되면 MSDS를 재제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때 국외제조자에게 LOC를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함

다) 비공개 승인 관련

비공개 승인 관련된 발제 내용은 대체물질명, 미분류 물질 정보기재, 연구개발 물질 심사지연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 ① 제품별 비공개 승인 신청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라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을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환경부 명명법에 따라 작성하게 되면 물질 유추가 쉬워 같은 산업계에 있는 경쟁사, 고객사에 영업비밀이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함

-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MSDS 제출 시에는 해외 제조사가 발행한 LOC 제출이 가능하나 제112조에는 LOC를 인정해주지 않는 모순이 있음
- ③ 연구개발 물질에 관한 비공개 승인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신규물질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2) 참석자 의견 및 토론 결과

3차 포럼 참석자의 주요 의견을 MSDS 작성 및 제출, 비공개 승인, 기타의견으로 구분하였으며, MSDS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전문가 의견은 <표 III-11>과 같다.

국내 제조자의 LOC 인정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전문가들은 국내 제조자의 LOC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 제도 이행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LOC를 인정함으로써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다수의 전문가가 동의하였다. 그러나 미분류 물질은 독성자료가 없을 뿐 유해성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국내 LOC를 허용하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급성 및 독성 물질의 추정값 계산의 어려움, 유통 물질의 통계 등 우리나라 전반적인 화학물질의 파악, 관리가 어려움, MSDS에 대한 신뢰성 저하 등을 우려하였다. 이에 일부 전문가는 국내 LOC를 인정해주기보다는 공단에 제출한 미분류 물질 목록을 제 3자(타 업체 및 컨설팅 업체 등)에게 공유하여 유해성, 위험성 분류정보를 공유하고 MSDS 작성 및 제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11〉 MSDS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전문가 의견

구 분	내용
MSDS 제출시 미분류 물질에 대한 확인서류	• 혼합물 제조 시, 국내제조업체가 해외로부터 양도받은 물질에 대한 LOC 뿐만 아니라 국내제조자가 발행하는 LOC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음
	• 미분류 물질 확인서류(LOC) 제출과 관련하여 국외제조자는 도용방지를 위해 LOC를 활용할 수 있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에서 LOC 허용을 할 수 없음, 국내의 LOC를 허용할 경우 MSDS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 질 수 있음
	• 국내의 LOC를 허용하게 된다면, 급성 및 독성 물질의 추정값 계산, 유통물질의 통계, 우리나라 전반적인 화학물질 파악 및 관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미분류 물질은 유해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독성 자료가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미분류 물질에 대한 정보공개는 필요함
	• 국내 LOC를 허용하게 되면 하위 사용자로 갈수록 제품에 들어가는 물질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으므로,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최소 성분정보만 공개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비공개 승인과 관련하여 미분류 물질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는 부분도 전문가 의견은 나뉘어졌다. 일부 전문가는 법에 근거가 없는데 시행규칙에서 미분류 물질에 대한 정보까지 작성하라는 것은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임을 지적하였고, 다른 전문가들은 MSDS 비공개 승인 심사에서 모든 성분의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적정성 검토 시 모든 성분을 알아야 발암성 및 급성독성 해당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발암성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추

가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건강보호와 알 권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미분류 물질의 정보까지도 충분히 확보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체물질명과 R&D 및 기타 전문가 의견은 아래 표와 같다(III-12~13).

〈표 III-12〉 비공개 승인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

구 분	내용
대체물질명	• 제품의 화학물질명 순서대로 작성해야만 승인이 나는데, 비슷한 업계의 입장에서 유추가 가능하므로 포괄적이고 명확하게 대체명을 지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 필요 • 기업들이 완화된 총칭명을 원한다면, Lexicon guide 등의 가이드를 추가하여 활용하면될 것으로 생각됨
R&D	• 실험실 외부로 유통을 하지 않고, 실험실 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해주는 등의 완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보완요청으로 R&D 심사가 지연되어 시간적으로 기업이 어려워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제품단위보다 물질단위로 심사를 하는 방향이 적절함
미분류 물질 성분공개	• 비공개 심사에서 1% 이상의 성분 공개는 급성독성인지 발암성인지에 따라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됨 • 원료성분에 대한 정보 확보 및 미분류 물질 제출 서류 등 기업의 불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알 권리를 위해 미분류 되는 물질의 정보까지의 확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 MSDS 미분류 물질은 독성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이지만 유해성이 없는 물질이라고 오해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기업에 제대로 인지시키고, 기준을 바로 잡는 것이 좋을듯함

〈표 Ⅲ-13〉 전문가의 기타 주요 의견

- 근로자 건강보호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유해성 정보를 모르는 미분류 물질의 정보를 남용하거나 악용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점이 필요함
- 작업환경측정 현장에서는 개정 이후 MSDS의 질이 향상 되었다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공개된 분류/미분류 물질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된 DB를 기업들이 보유할 수 있도록 정보에 대해 체계화하고 최신화 될 수 있도록 MSDS 제도를 운영해야 함
- 공단은 확보된 DB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주면 좋을 것 같음

4) 4차 포럼 결과

(1) 발제내용

4차 포럼은 1차 포럼의 참석대상과 동일하게 다국적 기업 및 컨설팅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1차 포럼과 온라인 의견수렴에서 나온 산안법 제110조(MSDS 작성 및 제출) 및 산안법 제112조(비공개 승인)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에 대해 연구 책임자가 발제하였고 발제 내용은 3차 포럼과 동일하였다(표 Ⅲ-14).

〈표 III-14〉 4차 포럼 주요 발제내용

구 분	내용
MSDS 제출 유예기간의 합리화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54호(MSDS 작성·제출 등 유예기간 합리화) 시행규칙 일부 변경안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의 유예기간이 변경되었으나 국내에만 특례를 받는다는 일부 의견이 있음
MSDS 작성 및 제출 시 미분류 물질에 대한 확인서류	(산안법 제110조제2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국외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합한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에 국내 제조 제품에 대해서는 확인서(LOC)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제기됨
비공개 승인 관련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MSDS 내 산안법 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을 수 있음 - 수입제품의 경우, MSDS 제출 시에는 해외 제조사가 발행한 LOC의 제출이 가능하나 비공개 승인 신청 시에는 LOC 제출이 불가함 - 대체물질명의 가이드라인 필요함 - 연구개발용 소량샘플(100kg 이하) 면제 요청: 심의 기간이 오래 걸림

(2) 참석자 의견 및 토론결과

다국적 기업은 모든 성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임을 강조하였으며, 추가적으로 MSDS 작성 및 제출 시 위/수탁 제조의 경우, 위탁제조자가 영업비밀 정보를 수탁제조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상황이 발행하고, 수탁제조자는 모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표 III-15).

〈표 III-15〉 4차 포럼의 MSDS 작성 및 제출 관련 의견

구분	내용
위/수탁 제조업체 의 MSDS 제출	위/수탁 제조의 경우, 위탁제조자가 영업비밀 정보를 수탁제조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수탁제조자의 경우 모든 정보를 받지 못해 MSDS 작성 및 제출 시 어려움이 발생
국내 제조자 혼합물질	영업 비밀 신청 시 신청하고자 하는 물질 이외 전성분을 제출해야 하나, 원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제조자는 원료의 전성분에 대해 알 수 없어 MSDS 제출이 불가함

비공개 승인과 관련된 의견 중에서는 연구개발 분야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III-16).

〈표 III-16〉 4차 포럼의 비공개 승인 관련 의견

구분	내용
연구개발 (R&D)	• 비공개 승인 시 물질에 대한 심사보다 서류에 대한 보완요청(구조식, 물질 함유량 등)이 자주 발생하며, 승인이 통과 되는 기간까지 3-4개월 소요되어 연구개발 진행이 어려움 • 연구개발용 소량 샘플은 빠른 수급 및 신속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면제가 필요함 • 연구개발을 하기 전에 비공개 관련 심사를 받고, 실험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어 행정적인 낭비가 심함 • 유해물질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유해성 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작업자들이 보호받는 상황에서 물질이 공급되고 있는지, 제대로 된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성성분에 집중되고 있음
변경 및 환불	• 비공개 승인 변경과 관련하여 승인 신청 이후 변경사항(첨부 서류, GHS 변경 등)이 있을 시 제출된 내용은 수정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건으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기존 건에 대한 변경 및 환불을 해주는 제도가 필요함
물질별 제출	• 수입업체로부터 수입된 한 가지 물질이 여러 제품에 들어가는 경우에 제품별로 심사하다 보니 중복신청으로 인한 부담감이 발생함
미분류 물질	• 영업비밀의 타당성이 아니라 MSDS에 들어가 있는 미분류 성분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제출해야 하므로 영업비밀 승인이 어려움
성분공개	• 국외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제품의 비공개 승인을 받을 경우, 해외의 원료공급업체는 전성분을 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수입하는 국내제조자 입장에서는 전성분을 알 수가 없어 영업비밀 심사 진행이 불가함 • 영업비밀 성분이 최종 수출제품에 포함되어 한국에 수출되는 경우, 해외 생산자도 원료의 영업비밀 성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비공개 승인이 불가함

〈표 III-17〉 4차 포럼의 기타 의견

구분	내용
기타	•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OR)의 경우, 수입자 정보만 파악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국외 제조자가 수출한 모든 제품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담이 큼 • 제104조에 대한 GHS 분류기준을 참고할 수 있는 DB가 부족해 사업장 마다 제출하는 GHS 분류 결과가 상이하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준이 될 수 있는 DB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MSDS 정보를 제공해주는 DB의 최신 업데이트 주기가 1년에 1번 정도로 필요함 • MSDS를 제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 • 검토가 이뤄지다 보면, MSDS를 제출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아 기업 간 극과 극으로 나뉘질 수 있는 신뢰성 문제가 발생함

5) 5차 포럼 결과

(1) 발제내용

5차 포럼은 노동계와 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진행되었으며, 1~4차 포럼 및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된 주요쟁점 세 가지에 대해서 연구책임자가 발제하였고 발제내용은 다음과 같다(부록 7 참조).

가)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관련 국내 제조기업과 수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만 허용하고 있음

- 국내 제조사의 경우 타 제조사로부터 화학물질을 양도받아 혼합물을 제조할 경우 MSDS자료는 확보 가능하나 분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자료는 경우에 따라 확보할 수 없음. 이 경우 법제110조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는 MSDS 작성은 가능하나 별도자료 제출이 불가하여 법을 이행하기 어려움
- (개선방안) 분류되지 않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국내 화학물질 제조기업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 제110조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여 양도하는 경우 분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거나, 국내 제조기업의 경우도 수입자와 같이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신청 시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함유량 및 신청여부 등에 대한 문제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승인 대상은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대상인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이지만 시행규칙 161조제2항 및 별지 제63호 서식에 따라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이럴 경우,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LOC)를 받은 수입자 또는 국내 화학물질 제조업체로부터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받지 못한 기업은 영업 비밀을 신청할 수 없음
- (개선방안) 법 제110조 및 제112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신청은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만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시행규칙 및 별지 제63호 서식을 개정하여야 함. 법 제110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LOC) 인정

-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장에 게시·비치하여 노동자에게 알리도록 하되, 정부 제출은 면제했으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
 -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의 경우 현실적으로 영업비밀 승인 심사로 연구개발이 지연되거나 기업의 정보 유출 피해가 우려됨
 - (개선방안)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의 경우, 영업비밀 승인 심사를 제외하는 방안 필요

(2) 참석자 의견

노동계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승인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였으며 특히,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미분류 물질)에 대한 정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단위 노동조합의 경우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으며,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감추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심사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노동현장의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불신에서 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노동계와 기업체의 공통적인 의견은 노동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제대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성분보다는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과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각각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노동계 의견

- 본 제도가 도입되게 된 취지와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취지와 비취웠을 때 타당한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포함되어야 함
- 심층면접조사, 설문지 조사 등을 통한 노동계 의견 수렴 필요
- 노동자의 건강과 알 권리 차원에서 연구책임자의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함
- 미분류 물질 등과 관련하여 도입 당시의 상황과 목적이 있고 그 당시의 현실과 현 시점에서 기업이 작성·제출해야하는 실무자 버전과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노동계는 성분에 집착하기 보다는 노동자가 해당 물질을 어떻게 다뤄야하는지가 더 중요함
- 비공개 승인이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함이고 노동자에게 숨기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으며, 올해 시행되고 2~3년 후에 현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현장에 적용하지 않는 기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에 대한 홍보와 함께 개정된 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나) 기업체 의견

- 성분보다는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화학물질 분류기준을 어떤 DB를 이용해서 적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임
- 현행제도를 통해 산업계의 MSDS 작성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실무자들이 작성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면 MSDS 질이 향상될 수 있음
- 노동자들의 알 권리는 성분이 아닌 노동자들의 건강과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핵심이며, 노동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은 유해성이기 때문에 노출 시 조치사항이나 보관 시 중요사항, 취급 시 주요사항 등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이미 유해성은 충분히 공개하고 있음에도 전성분을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전성분 요구는 심사를 통해 승인받는 절차상에서는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며 성분제출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절대 결론을 내릴 수 없음
- 기업들이 영업비밀을 하고자 하는 주목적은 노동자에게 정보를 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회사로부터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3. 불특정 이해당사자(온라인) 의견수렴 결과

불특정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 수렴은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소속이나 이름 등의 정보를 밝히지 않고 의견내용만을 수렴하여 정리하였다. 따라서 응답자의 특성이나 구성(기업담당자, 노동계, 학계 등)을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많은 응답자의 참여가 가능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1) MSDS 작성 및 제출관련 의견

MSDS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불특정 이해당사자들로부터 국내에서 혼합물 제조 시 비유해성 원재료나 공급업체의 유예기간, 영업비밀 물질 등의 이유로 모든 성분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원료회사의 MSDS 또는 LOC 제출 등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외 MSDS 작성 및 제출관련 의견은 <표 III-18>과 같다.

〈표 III-18〉 MSDS 작성 및 제출관련 온라인 의견수렴결과

구분	내용
LOC	• 혼합물의 MSDS 제출 시 전성분 요구되나 비유해성 원재료의 경우 성분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원재료사의 MSDS 또는 LOC 제출을 등의 대안마련 필요 • 영업비밀 성분이 함유된 MSDS 제출 비대상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혼합물 제품의 경우, 원료의 영업비밀 정보를 알 수 없어 제출 불가함 → 국내제조 제품의 경우에도 LOC 인정(1) • 국외제조자로부터 수입할 경우, 수입자는 LOC를 사용해 제출한다고 해도 수입자가 단순 혼합해 하위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되면 수입자가 MSDS를 재제출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럴 경우 LOC를 받은 물질에 대해서도 국외제조자에 문의 해야하기 때문에 LOC 연계가 가능하도록 요청
유해성에 대한 기준	• 대표제품 MSDS 제출 시 제12조 2항의 3번 항목의 “유사한 유해성을 가질 것”이 애매함 더 명확한 제시요청
유예기간	•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변경사항 발생 시에도 유예기간 적용 필요 • 원료 공급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받아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을 받지 않고, MSDS를 제공받음. 이때 수입자는 MSDS를 제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체의 유예기간 또는 영업비밀 물질로 인한 성분확인 불가함
동일물질, 수입자가 다른 경우	• 동일물질 또는 동일 제품의 수입자만 다른 경우, 해당 수입자 정보만 수정하여 일괄적으로 물질 또는 제품의 MSDS 제출이 가능하였으면 좋겠음 • 동일 제품을 여러 업체가 수입하는 경우, 각기 다른 MSDS가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있어 사용자에게 정보의 혼란 야기
MSDS 번호	• MSDS 제출 또는 영업비밀정보(CBI) 신청 시 성분을 MSDS 번호로 기입할 수 있었으면 함 (공급업체가 성분정보를 전체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으므로)

수입자가 MSDS를 제출 하는 경우	수입자가 MSDS 제출하는 경우, 공급자 정보수정 요청 시 어려움 → 판매목적이 아닌 제품제조 용도로만 사용된다면 수입자 정보기재 없이 공급자의 정보로 작성된 MSDS 제출하도록 요청
MSDS 제출 리스트	MSDS 제출 제품 리스트 있었으면 함 : 컨설팅 업체마다 마다 기준이 달라짐
MSDS 보관 규정	MSDS 작성의 근거가 확인될 수 있도록 수입자는 수출자 또는 국외 제조자가 제공한 MSDS를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마련 필요
화학물질명 대체 정보 법적 근거	전성분의 확보를 전제로 하는 MSDS 법적 요구조건(1%, 0.1% 이상 구성성분의 제출 및 제 3항 기재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현 제도를 유지해야한다면 구체적인 화학물질명 및 CAS No. 등의 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비공개 승인심사 관련 의견

비공개 승인심사와 관련된 가장 많은 의견 역시 MSDS 작성 및 제출과 동일하게 원료(공급)업체의 영업비밀 물질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려우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으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서 승인받은 대체물질명이 불승인 되는 사례가 있어 화평법에서 승인받은 총칭명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영업비밀 입증자료에 대한 정확한 양식을 제공해주거나 대체물질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 및 심사기준의 통일 등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III-19).

〈표 III-19〉 비공개 승인심사 관련 의견수렴결과

구분	내용
비공개 심사 양식	• 영업비밀 입증자료에 대한 정확한 양식 필요
비공개 승인심사 관련	• 원료(공급)업체의 기밀물질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려우므로 대체할 수 있는 자료필요 → 원료메이커에서 제공하는 제출승인번호 및 영업비밀 물질 승인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필요 • 수입제품의 경우, LOC 제출 불가함. 유해성이 없는 성분에 대해서는 LOC 제출가능 하도록 개선 요청
대체물질명	• 화평법에서 승인받은 대체물질명의 불승인 → 화평법에서 승인받은 총칭명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 • 대체물질명 : 심사기준 통일,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 • 대체물질명 자료부족 • 환경부 고시 [자료보호 신청서의 작성 방법 및 보호 자료 관리 방법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명칭 방법에 따라 대체명칭을 설정하는 시스템인데 이는 동업 타사에 의해 유추될 가능성이 높음 → 제조업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방법 검토
비공개 승인 제출서류	• 비공개 승인 제출서류 목록관련 내용 이해하기 어려움(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 비밀에 해당함)

	입증하는 자료자체를 어디를 참고하여 제출해야하는지) • 비공개 진행 신청 시 제출서류에 따른 업체 내부에서 외부공개가 힘든 자료의 경우, 대체서류 구비해서 제출할 수 있었으면 함
LOC 관련	• 화관법 외에도 해당 영업비밀 물질의 유해위험성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는 LOC 통합서식 필요(제도화)(2)
계약서 관련	• 영업비밀 타당성 입증 시 요구되는 비밀유지 계약서(외부업체와의 NDA 계약서)를 해외제조사로부터 받기 어려움 → 주무관청에서 직접 해외제조사에 요청하는등 다른방안 마련
연구개발용 샘플 & 심사기간	• 간접수입되는 제품의 영업비밀을 해야 하는 경우, 수입자 뿐 아니라 해외제조업체 까지 영업비밀 성분에 대한 비공개 승인이 어려워 연구개발에 지장초래 → 연구개발용 소량샘플(100KG 이하) 면제요청 • 연구개발용 MSDS 비공개 심의가 너무 오래걸림 → 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하도록 요망
비공개 승인 심사 관련	• 제품 기준이 아닌 성분기준으로 심사했으면 함 : 추가적인 비용상승 및 행정절차로 인해 업무과중 발생 → 화평법과 마찬가지로 성분기준으로 심사진행 하였으면 함 • 비공개 승인 신청의 요구자료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기준치가 심하며 기간이 너무 소요됨 • 비공개 승인 심사에 대한 공개교육 필요
영업비밀 입증자료 관련	•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근거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7 내용 중 영업비밀의 필수요건으로 비공지성, 비밀 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으로 규정 되어있는데, 비공지성의 정보가 있으면 영업비밀의 입증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정보는 생략하고, 비공개 승인 시 비공지성만 검토 요청했으면 함.
영업 비밀 유효기간	• 영업비밀 승인 유효기간 5년 폐지 → 유효기간 만료로 갱신하거나 MSDS를 새로 신청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됨
선임서사본 제공의무	• 산안법 시행규칙 제166조 제5항 국외제조가 또는 그에 의하여 선임된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제 4항에 따른 신고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선임된 자는 MSDS에 기본정보를 작성하기 때문에 별도의 선임서사본이 없어도 선임자를 알 수 있음. 이에 따라 선임서사본제공의무 폐지 요청

3) 시스템 관련 의견

불특정 이해당사자들의 시스템과 관련된 의견 중 가장 많이 요구된 의견은 단순 수정 기능의 추가이다. MSDS를 최종적으로 제출하고 나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기능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이었다. 뿐 아니라 서류제출 시 대용량으로 업로드(mass uploading)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구체적인 의견은 <표 III-20>과 같다.

〈표 III-20〉 시스템 관련 의견수렴결과

구 분	내 용
수정 및 변경	• MSDS 제출 후 정보 수정 등 단순 수정 기능 추가 • MSDS 재제출 횟수 제한 없도록 요청 • 비공개 승인 신청 시 변경신청 또는 신청 취소 기능
비공개 승인시 MSDS 번호선택	•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혼합하는 국내제조제품의 경우에는 MSDS 번호기입 가능하나 비공개 승인신청 시스템에서는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 및 대체자료 신청물질 입력 시 입력 선택란에 MSDS 번호를 선택하는 란이 없어 국내 제조제품에 대한 비공개 승인신청 할 수 없음
MSDS 제출 계정	• MSDS 재제출 시 다른 계정에서도 제출가능 하도록 개선요청
MSDS 기능 추가	• 선임번호 선택 시 번호의 정리 및 해외제조사명 조회기능 • 가상계좌정보 핸드폰, 개인연락이 아닌 홈페이지 내에서 입금상태 중이 아닌 계좌정보 등의 정보확인 가능하도록 요청 • 비공개 신청 관련 서류 제출 시 자료제출 진행사항이 확인가능(진행중 사항, 제출서류 확인 등) 하도록 요청 • 대용량 첨부(Mass upload)가 되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음 • 그룹제출 사용이 매우 어려움 : 복잡하고, 사용법이 없음, XML을 사용하여 시스템구축하고 사용해야하나 매우 접근성이 떨어짐 • 타사의 비공개 물질을 사용해 제품을 제조할 때, 해당 제품의 msds를 작성하여 비공개 승인이 불가함 → 제공하기 기능 활성화

로그인 절차	로그인 절차 복잡함
유예기간 만료	유예기간 적용 원료 사용의 불가능 : 협력사에 비공개 물질 신청 및 MSDS 제출을 요청하고 있으나 유예기간이 남아있다고 진행하지 않고 있음
적정성 평가	- 현재 공단에서 MSDS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MSDS 제출 승인번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130호에 맞지않는 MSDS 발견됨 -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 제출자 혹은 사용자에게 법적책임을 요구하므로 제출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적으로 제출되지 않도록 개선요청
양도 및 제공방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13조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양도 및 제공방법에 대해 등기우편이나 정보통신망 및 전자문서로 송부하고, 상대방의 수신여부를 확인하도록 양조다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됨 → 양도 및 제공방법을 MSDS 제출 시스템으로 통합 요청

4) 기타 의견

기타의견에서 불특정이해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제시한 공통된 의견은 유해물질을 분류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기존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유해물질 분류 시 사업장 마다 분류 기준이 다를 수 있어 혼란스럽다는 것이며 그 외에 기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GHS 분류기준 영어가이드 필요
- 예제, 예외사례 등에 관한 정보제공
- 확실한 유해인자의 기준 가이드가 필요함
- 미분류 물질, 신규물질에 대한 MSDS 비공개 심의 신청 가능하도록 요청
- GHS 분류 : 회사들은 본인 제품과 위험성에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류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지고, 공단이 분류의 세부사항을 검토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됨

-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신청 시 규정에 관한 기준만 검토하도록 요청(회사 내 정보포함한 문제로 인해 공단이 세부사항 검토하지 않기를 요청하고 있음)
- 영업비밀 신청은 물질의 재무 수익성에 기초해서는 안되며 비공개 손실에 대한 재무적 영향에 대한 초점은 정보가 보호되지 않는 경우 제 3자가 획득할 R&D 투자손실 및 경쟁력과 관련이 있고 한국뿐 아니라 국외에도 노출되면 안되는 정보임
- 온라인 자가진단이 불가능해지면서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필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의 항목 간 연관성이나 전체적인 평가보다는 개별항목에 대한 분리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짐

IV. 결론 및 제언

.....

IV. 결론 및 제언

1. 주요결과

본 연구는 2021년 0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제도의 안착 및 발전을 위해 기업 및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관련 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으며 포럼 및 의견수렴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영계 의견(부록 6 참조)

불특정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국내·외 기업들의 주요 의견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내 제조자의 MSDS 제출 시 LOC는 인정되고 있지 않아 제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혼합물 제조자들이 공급업체로부터 혼합물질 또는 단일물질 형태로 원료를 제공받을 때, 영업비밀이거나 미분류 물질의 정보를 알 수 없어서 영업비밀 신청이 어렵다.

셋째, 연구개발의 경우, 최종단계까지 가지 않고 일회성 실험 후 폐기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승인절차로 인해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

넷째, 현재 명명법에 따르면 유사업체에서 유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포괄적이고 명확한 대체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2) 노동계

노조는 개정된 MSDS 작성 및 제출과 비공개 승인 등에 관한 사항 보다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전달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노동자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와 함량, 취급 시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3) 전문가

전문가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제조자의 경우 국외제조자와 달리 미분류 물질에 대한 확인 서류를 인정하지 않아 MSDS 작성은 가능하나 제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분류 물질에 대한 확인은 국외제조자와 동일하게 국내제조자가 발행하는 LOC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분류 물질은 독성자료가 없을 뿐 유해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국내 LOC를 허용하게 된다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파악 및 관리가 어렵고 MSDS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다.

셋째,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미분류 물질 작성에 대한 근거가 없으나 시행규칙에서 미분류 정보까지 작성하라는 것은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넷째, MSDS 비공개 승인 심사에서 모든 성분의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적정성 검토 시 모든 성분을 알아야 발암성 및 급성독성 해당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발암성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건강보호와 알 권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미분류 물질의 정보까지도 충분히 확보해야한다.

2. 결론

1) 국내 제조기업과 수입자와의 형평성 문제(산안법 제110조 관련)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제조사의 경우 타 제조사로부터 화학물질을 양도받아 혼합물을 제조할 경우 MSDS 자료 확보는 가능하지만 분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자료 확보하기가 어려워 MSDS 작성은 가능하나 별도자료 제출을 할 수 없어 법을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분류되지 않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국내 화학물질 제조기업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 제110조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여 양도하는 경우 분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라고 명확히 하거나, 국내 제조기업의 경우에도 수입자와 동일하게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도 인정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단, 국내제조자에게도 현행법령(법 제175호제5항제6호)에서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적용하는 벌칙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미분류 물질에 대한 허위·악용·남용 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비공개 승인신청 시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 명칭 및 함유량 작성 문제(산안법 제112조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승인 대상은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대상인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이다. 그러나 시행규칙 제161조제2항 및 별지 제63호 서식에 따라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LOC)를 받은 수입자 또는 국내 화학물질 제조업체로부터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받지 못한 기업은 영업 비밀을 신청할 수 없는 실정이다.

법 제112조에 해당 물질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규칙에서 미분류 물질의 구성 및 함유량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 정합성을 봤을 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위임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며, LOC를 인정해 주고 있는 제110조와는 상반된 조항으로 모순이 있다.

따라서 법 제110조 및 제112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신청은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만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시행규칙 및 별지 제63호 서식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법 제110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LOC)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의 정보유출 및 연구개발 지연문제

연구개발의 경우,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작성을 비롯한 비공개 승인절차로 인해 연구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또한 화학물질 본래의 이름을 대체하는 대체 명칭은 환경부 고시를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단일물질에 대한 대체 명칭이 아닌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대체 명칭으로 유사한 제품을 만드는 동종 업체에서는 대체 명칭의 본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적절한 대체명칭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비공개 승인 심사를 제외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노동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의 정확성 및 최신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분류기준 강화와 미분류 물질에 대한 허위·악용·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하고, 노동조합 또는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들에게는 본 제도의 이해와 개선사항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다면 개정된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심사제도의 안착 및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제언

노동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화학제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분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기보다는 제104조에 따른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제110조 3항에서는 변경된 경우에 대한 해석의 모호함이 발생하므로 2년 주기로 변경되는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GHS) 개정주기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화학물질 분류의 명확한 주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표 IV-1).

〈표 IV-1〉 화학물질 분류주기에 대한 규정 신설(안)

현행(제110조제3항)	개정 의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2년 마다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 제조사의 경우 국내 타 제조사로부터 화학물질을 양도받아 혼합물을 제조할 경우 MSDS 자료의 확보는 가능하나 분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자료는 경우에 따라 확보할 수 없어 MSDS 별도자료 제출이 어려우므로 법을 이행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표 IV-2〉와 같이 국내제조자가 발행하는 LOC도 인정하여 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10조제2항제3호의 신설을 제안한다.

〈표 IV-2〉 물질안전보건자료 별도제출 제외 관련 규정 신설(안)

현행(제110조제2항제2호)	개정 의견(제110조제2항3호 신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국외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국내에서 제공하려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작성 등을 포함한 비공개 승인절차로 인해 연구개발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일정 제조량 이하이거나 흡 후드 등의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를 한 실험실, 또는 용도 구분 등에 대한 기준에 따른 제외기준을 설정하여 비공개 승인 심사를 일부 면제하는 개선안이 필요하다(표 IV-3).

〈표 IV-3〉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비공개 승인 심사 면제 규정 신설(안)

개정 의견(제112조제11항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경우 제외된다.

※ 제외기준 고려사항

1. 일정 제조량 이하
2. 흡 후드 등의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한 실험실
3. 용도
 -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등

참고문헌

신은학, 수입업체·유통업체 작성 MSDS의 신뢰성 개선 방안 연구.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GHS MSDS 이행관리 및 영업비밀 적용실태 조사 연구.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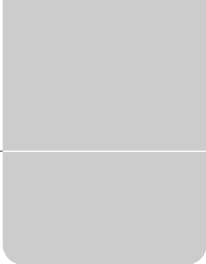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MSDS 시스템 장기적 운영방안(로드맵) 마련 연구. 2020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 적용 연구. 2019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요 선진외국과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MSDS 영업비밀 제도 비교연구. 2011

이종한 등. 사업장 MSDS 영업비밀 적용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위생학회지, 제21권 제3호(2011)

조민재, 모 화학물질 제조사업장에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상 영업비밀 및 정보미공개에 관한 현황 및 특성분석.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the current system for submission and partial non-disclosure of MSDS.

Objective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way of improving the current system for submission and partial non-disclosure MSDS by collecting and reflecting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such as companies and labor unions.

Methods : Five forums were held, composed of domestic companies, multinational companies, labor unions, and experts. And the opinions of unspecified stakeholders were collected online.

Results : The company requested the accreditation of the LOC of the domestic manufacturer. In addition, it requested an exemption from the trade secret examination system for R&D products. The union said that the method of providing and delivering information on chemical substances was important. Experts were divided on the opinion that the information on unclassified chemicals was important, whereas the opinion that it is not important at present.

Conclusion : In order to strengthen workers' right to know and secure their right to health,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information on the hazards and risks of chemical products. For this purpose, rather than submitting information on unclassified substanc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lassification of chemical substances according to Article 104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Key words : MSDS, submission, non-disclosure, unclassified

부록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에 관한 특례)_개정 후

부칙 <제272호, 2019. 12. 26.>

제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 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종전의 법(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인 경우
가. 제조·수입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 2022년 1월 16일
나. 제조·수입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2023년 1월 16일
다. 제조·수입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 2024년 1월 16일
라. 제조·수입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 2025년 1월 16일
마. 제조·수입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 2026년 1월 16일
2. 종전의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가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부터 해당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아 이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한 자인 경우: 2026년 1월 16일. 다만, 종전의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가 2021년 1월 16일 이후에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부터 해당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제16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 11. 19.]

제9조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로 한다.

- ④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에 관한 특례)_개정 전

부칙 <제272호, 2019. 12. 26.>

제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을 부칙 제7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 2022년 1월 16일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2023년 1월 16일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 2024년 1월 16일
4.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 2025년 1월 16일
5.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 2026년 1월 16일

제9조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로 한다.

- ④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너. MSDS 작성·제출 등 유예기간 합리화(안부칙 제9조·10조·11조)

MSDS 제출·비공개 승인 제도 시행(‘20.1.16.) 시 제품 규모에 따른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나 중간제품 제조자가 원료 제조자보다 유예기간이 짧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간제품 제조자에게는 최대 유예기간(‘26.1.16.까지) 부여

제3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공 및 비공개 승인에 대한 특례) ①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부칙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수입한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다른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에 대하여는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을 2026년 1월 16일로 한다. 다만, 물질안전

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을 때 법 제110에 따라 작성·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법 제112조에 따라 일부 비공개 승인을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은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부칙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1조에 따른 날이 아닌 노동부령 제272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을 적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도 적용한다.

4. 온라인 의견수렴결과

연번	의견
1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의 수출자 또는 국외 제조자로 부터 MSDS 를 받아야 한다 또는 받은 MSDS 를 일정기간(예: 수입일로 부터 5년)보관해야 한다.' 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규정이 법에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MSDS 작성 및 제출 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구성성분이 MSDS 작성과 관련된 고시에 따라 유해성이 분류되는 물질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수출자 또는 국외 제조자로 부터 MSDS 를 제공받아야 구성성분의 CAS No. 및 함량 정보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법 상에는 수입자는 MSDS 작성 및 제출의 의무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의무만 있고, 수출자 또는 국외 제조자로 부터 MSDS 를 받아서 보관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MSDS 작성의 근거가 확인될 수 있도록, 수출자 또는 국외 제조자가 제공한 MSDS 를 수입자는 보관해야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수 또는 고의로 구성성분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	1. MSDS 3번 항목에 비유해성 물질에 대한 정보는 적지 않게끔 변경이 되었는데 MSDS 제출 시 여러가지 원재료를 혼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모든 성분내역을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유해성 원재료의 경우 영업기밀로 인하여 성분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므로 최종 혼합물의 MSDS 제출 시 원재료사의 MSDS, LOC 서식을 제출함으로써 성분내역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한번에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MSDS mass 업로드 기능 추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3. 제출 후 오타로 인한 단순 수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3	없음
4	'대체자료 중 대체명칭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환경부 고시 「자료보

	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를 준용한다고 되어있습지만 화평법에서 승인된 총칭명이 대체명칭으로 승인되기 어렵습니다. cycle과 cyclic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니 사용 가능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MSDS 제출 제품에 대한 리스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컨설팅 업체에 문의하면 어떤 업체에서는 제출 제품이라고 하고, 어떤 업체에서는 안해된다고 합니다. 저희처럼 작은 무역회사는 MSDS 전문 프로그램이 없다보니 컨설팅 업체에 대행해야 하는데 비용부담이 너무나 큼니다. 정확하게 어떤 제품들이 MSDS 제출이 필요한지 제품제출리스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6	기본적으로 화학산업계에서는 upstream과 downstream 업계 사이에 전성분을 공유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유해성, 위험성 정보의 전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성분정보의 교류는 이루어지지만 해당 목적 이외의 정보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공유됩니다. 따라서 전성분의 확보를 전제로 하는 MSDS의 법적 요구조건 (1%, 0.1% 이상 구성성분의 제출 및 제 3항 기재 등)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화학산업구조가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적인 방향성을 유지하시고자 한다면, 구체적인 화학물질명 및 CAS 번호 등의 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정보 (예를 들어 MSDS 번호,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번호 등)를 업계간에 그리고 정부와 업계간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주셔야 현행 산안법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수입화학물질에만 허용되는 성분확인서(LOC)가 제조회화학물질에도 허용되어야 제조자들이 산안법에 순응하며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점도 강조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산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제도를 운영하실 경우 국내 화학산업계의 불법을 양산하실 수 있고, 장기적으로 신규 제품의 국내 수입, 제조를 막는 규제로 인하여 국내 화학산업의 고사를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저희는 90%가까이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해당되면 해당되는대로, 아니면 아닌대로, 외국바이어에게 설명을 하여 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분류기준(제141조 및 별표18, 제4조 및 별표1) 자체가 영어가이드문이 없는것 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방대한 자료를 수입업자가 번역을 하는것부터 큰 난관입니다. 그리고, MSDS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자체를 어디서 참고하여 제출해야하는지부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승인신청에 대한 부분은 많은 수입업자들이 어려워할 듯 합니다.
8	해외 제조사에서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기 어렵고 광범위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비공개심사신청건에 대한 근본적인 사유는 타업체와의 견제를 위한 /업무상비밀인 대외비사항으로 인해 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사유서 뿐만아니라 그 구체적인 근거에 같은산업군에서의 매출량 파악이런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거나 또는 비슷한 내용이라면 공통적인 사유서의 한번의 제출로 모든 제품이나 물질에 대한 비공개 심사신청을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비공개심사건으로 인해 드는 물리적 비용이나 심적 부담감 및 시간적 압박으로 인해 신규제품의 판매 부진으로 사업에서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비공개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9	원료 제조사에서 유해인자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을 영업비밀로 하여 비공개 승인을 받지 않고 대체명칭으로 기재한 경우 자체 제품(원료 +자체 영업비밀 물질)을 비공개 승인 신청하려는 경우 원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비공개 승인을 받지 못함
10	영업비밀 입증 자료에 대한 정확한 양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	대체화학물질명에 대한 자료가 너무 부족합니다.
12	안녕하십니까,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MSDS 제출 제도 관련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혼합물의 MSDS 제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원재료 역시 혼합물입니다. 혼합물인 원재료의 경우 유해성 분류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부분의 성분이 MSDS 기재 대상이 아닐 경우 구성성분 정보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 위험성 물질이 아닌 경우는 별도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혼합물인 원재료의 구성성분 정보가 없을 경우 MSDS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MSDS 제공 기능이 활성화 된대거나, 원재료 MSDS를 증빙 자료로 첨부하여 갈음하는 방식 등의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해주셔야 MSDS 제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연간 제조, 수입량 1,000톤 이상인 제품의 유예기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	화평법에서 승인받은 총칭명을 산안법 비공개 신청시 대체물질명으로 제출했는데, 보완요청을 받았습니다. 총칭명이 다르게 사용될 경우 고객사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등 많은 불편함이 야기됩니다. 기존에 화평법에서 승인받은 총칭명을 비공개 신청시 대체물질명으로 그대로 사용가능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	1. 대체명 관련 1.1. MSDS 심사관의 대체명 심사 기준 통일 필요: 동일한 물질에 대해 여러 번 승인된 대체명이 나중에 또 신청시 다른 심사관은 이의 정정을 요청하는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구함. 예) 구체적인 예: 동일물질 승인실적 7회 보완요구, 승인실적 10회 후 보완요구. 1.2. 대체명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 : 『대체 화학물질명칭 및 함유량 작성 안내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공단의 내부 논의에 따라 수시로 대체명 명명방법이 바뀜. 1.3. 고용노동부는 환경부의 “총칭명의 명명방법” 고시를 주로 이용하여 대체명 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기존에 수십 년간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운용해 온 총칭명 명명법을 달리 해석하여 환경부가 승인한 총칭명을 그대로 신청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두 부처간 총칭명 명명 심사의 통일화가 필요함. 이는 민원인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임. 1.4. 대체명 작성에 대해 공단은 오로지 특정 물질명에만 바탕하여 대체명 작성을 강요함. 이를 강요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수십년간 환경부가 물질명 또는 화학구조에 바탕하여 총칭명의 명명을 허용해 온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임. 대체명 작성은 기업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대체명 심사시 유연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공단의 대체명 심사방법에 따라 작성된 대체명은 전문가라면 어떤 화학물질인지 유추가능하므로, 그러므로 물질에 따라서는 영업기밀의 보호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2. ECHA (CLP) 등 분류 관련 2.1 비공개승인신청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ECHA의 분류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 최근 공단은 보완을 요구하여 민원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법률에도 다른 나라 어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어떤 국제기준을 만족하면 등록, 허가 등이 면제된다는 규정은 있음. 예. 원료화장품). ECHA의 현재 분류는 대부분 당국에서 심사가 완료된 분류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이런 막대한 부담을 주는 심사에 대해, 꼭 필요하다면 산안법에 반영 또는 MSDS작성관련 고시에 이를 반영하여 전국민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조치 후 이를 시행함이 타당합니다.

	먼저 법적인 근거를 마련 후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15	1. 수입제품의 경우, MSDS 제출시에는 해외제조사가 발행한 LOC의 제출이 가능하나 비공개 승인 신청시에는 LOC의 제출이 불가함. 비공개 승인 신청시에도 유해성이 없는 성분에 대해서는 LOC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함. (해외원료사로부터 성분 정보를 받기가 어려움) 2. MSDS 재제출 시 로그인한 계정에서 제출된 MSDS만 재제출이 가능한데, MSDS 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계정에서도 MSDS 재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함. 컨설팅사를 통해 MSDS를 최초 작성 및 제출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컨설팅사를 통한 재제출을 하려면 비용 부담이 되고 시간도 더 소요됨. 3. 개정법의 적용 유예기간을 받는 제품인데,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개정법의 적용이 필요함.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변경사항 발생 시에도 유예기간 적용을 요청함. 개정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변경사항이 반영된 MSDS의 제공도 늦어지고 있음.
16	수고하십니다. 1. 고상의 원료를 수입하여 액상으로 제조할 경우 2가지 모두 등록해야하는지 만약 2가지 모두를 등록해야한다면 함량 차이 부분 만 수정 등록하면 되는지 2. 공동등록을 의뢰한 상태인 경우 위탁업체에서 MSDS를 일괄 등록하는지 아니면 업체별 개별 등록을 해야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17	MSDS 제출에 대해서 1. 제출 후에 정보 수정할 수 없는데 수정할 수 있게 해 주세요. 2. 재제출은 한번만 가능한가요? 한번 재제출하고 나면 "재제출하기"의 버튼이 사라집니다.재제출 변수 제한 없도록 해 주세요. 비공개 승인 신청에 대해서 1. 변경신청이나 신청 취소의 기능이 있었으면 합니다.
18	선임받은 자로써 비공개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 타당성 입증시 요구되는 비밀유지 계약서(외부 업체와의 NDA 계약서)를 해외제조사로 부터 받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외제조사 입장에서 제3자에게 해당 계약서를 공유하는 것이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주무관청에서 직접 해외제조사로부터 관련 계약서를 요청한다던지 등의 다른 방법을 마련하여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	■ MSDS 제출 1) MSDS 신뢰성 문제 : 화학물질 제조/수입하는 기업들이 MSDS 제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 취지에 맞게 적합한 MSDS가 유통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의

로서의 법 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MSDS라도 제출만 하면 MSDS번호가 부여되는 방식으로는 적합한 MSDS가 유통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MSDS 제출이 신뢰성 없는 MSDS를 제출해도 된다는 인식으로 법시행 이전과 별반 다를것이 없는 불필요한 제도로 인식된다는 점으로 산업계에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최소한의 적합성 검토가 MSDS 제출 시 필요하다고 봄)

2) 유예기간 또는 영업비밀 물질로 인한 MSDS 제출 의무 준수 어려움

: 제조하는 화학제품 내에 함유된 원료화학제품을 구매 시 해당 원료화학제품의 공급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 받아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을 받지 않고 MSDS를 제공받기 때문에 우리 제품의 MSDS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유된 영업비밀 물질을 알 수가 없어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급사로부터 유예기간이 있다는 MSDS 제출 예외입증서류(유예기간이 있다는 서류)를 받아 우리 제품 MSDS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하나의 MSDS 제출

: 고용노동부고시 2020-130호 제12조 ②항에 따라 대표 제품 MSDS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성분이 동일한 경우 함유량 변화가 10%퍼센트포인트 변화에 따라 혼합물인 경우 혼합물 분류기준에 따라 유해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유사한 유해성을 가질 것이란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유해위험성이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것인지 일부 있어도 상관없이 없다는 것인지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대표 제품 MSDS 제출 규정을 더 명확히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 MSDS 비공개 승인

1) 구매품(수입) 영업비밀 물질 함유 비공개 승인 어려움

: 수입하는 화학제품에 영업비밀이 함유된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해외 제조자가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제품이라고 해서 영업비밀 물질을 공개하지 않거나 제출 및 비공개 승인을 받지 않고 MSDS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수입 시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출 및 비공개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수입화학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품의 유예기간은 연내 제출 대상이라서 MSDS 비공개 승인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 제조자들에게 LoC를 요청하여 받지만 환경부 LoC 서식으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산안법 영업비밀 제외대상 여부 및 유해위험성 여부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유예기간이 남아 있다는 증빙이 안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수입을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LoC 서식을 환경부와 통합하여 화학물질관리법 대상물질, 산업법 제외대상물질 및 비공개물질 유해위험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LoC 통합서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어야 합니다.(요구를 해도 제도의 근거가 없다고 제공해 주지 않고 있는 해외제조자가 많음)

	2) 내수 구매품/수입 구매품 비공개 물질 확인 어려움 : 비공개 물질은 수입 제품뿐만 아니라, 내수 구매품에도 상당 수 함유되어 있어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는 만찬가지로 제조 제품의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상존합니다. 별도의 유예기간을 주는 규정을 없애거나 예외입증서류 및 LoC를 의무적으로 제출받도록 하여 법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도 보완 필요 사항 1) 제출된 MSDS의 적합성 검토 필수 제도화 : 산업계 자발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제도 내에서 MSDS 신뢰성 제고를 제대로 인식시켜주어야 제대로된 MSDS 유통과 근로자 안전보건자료로 활용이 가능해 질 수 있음. 비공개 승인 심사시에만 MSDS 적합성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움. 2) 예외입증서 제공 제도 보완규정 신설 : 원료 구매품은 유예기간이 남아 있거나 유해위험성이 없어 MSDS 제출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입증서류를 받도록하여 제조제품의 MSDS 제출이 가능해 지도록 보완규정 신설이 필요함. 3) 통합 LoC 서식 제도 보완규정 신설 : 영업비밀 물질의 규제 확인범위에 화관법 외에도 산안법 제외대상물질 여부 포함 및 해당 영업비밀 물질의 유해위험성 여부도 확인 받을 수 있는 통합 LoC 서식을 제공해야 하는 규정을 보완.
20	1. 국내에 간접적으로 수입되는 영업비밀승인이 필요한 물질의 경우, 최종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 뿐만 아니라 최종제품을 해외에서 제조하는 제조업체도 해외 vendor의 영업비밀성분에 대한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기가 어려움. 이러한 경우, 해당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은 국내 수입이 불가하여, 특히나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알앤디 샘플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됨. 따라서 소량 샘플 (<100KG)의 경우에는 영업비밀승인 면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2. 영업비밀성분이 함유된 Non Haz (MSDS 제출 비대상)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혼합물로 제조된 국내 제조 제품의 경우, 원료에서 기인한 영업비밀성분의 물질정보를 알 수 없어 MSDS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임. 따라서 국내제조 제품의 MSDS 제출의 경우에도 수입 제품과 유사하게 LOC 등의 Letter를 이용하여 모든 성분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제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함. 3. 영업비밀성분이 함유된 수입 원료 등을 사용하여 혼합물을 제조하는 국내 제조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수입 원료업체가 제공한 MSDS 번호를 전달받아 시스템에 기입하여 신청을 할수가 있음. 그러나 현재 비공개승인신청 시스템에는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 및 대체자료 신청물질’ 입력시 입력선택란에 ‘MSDS번호’를 선택하는 란이 없어 국내 제조 제품에 대한 비공개 승인신청을 할수가 없는 상황임. 이에 수개월째 신제품 출시 및 고객사로의 연구개발용 샘플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영업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음. 따라서 빠른 시스템 개선이 되었으면 함.
21	시스템에서 선임번호 선택 시 번호의 정리는 어려울까요? 추가로 선임번호 선택 탭에서 옆에 해외제조사 명이 확인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MSDS제출 시스템과 선임 신청 시스템의 통합이 불가능한지요? 고용노동부의 대체물질명 신청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담당자 및 내부 회의에 따라 보완 내용이 자주 변경됨.)
22	저희는 현재 산업용 윤활유를 제조하여 전국에 판매중인 제조업체 입니다. 수백가지 제품들이 있고 각각에 맞는 다양한 첨가제등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첨가제들의 비율이나 종류, 배합비등은 회사의 경쟁력과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1급 비밀이자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두 영업비밀로 하지말고 공개를 하라는것은 회사의 1급비밀과 노하우, 자산을 모든이들에게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기유나 첨가제들에 유해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감없이 다 MSDS상에 오픈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하지만 유해성을 넘어서 첨가제 성분까지 어떤걸 넣었는지 모두 공단과 시장에 오픈하라는 것은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식약처에서 고객들의 안전 운운하며 맛집들 레시피를 모두 공개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누가 피땀싸면서 수십년간 개발한 포물러를 미쳤다고 공개합니까. 백신개발 업체나 약품 개발업체들이 본인들 제품의 배합비등을 공개합니까? 코카콜라한테도 콜라 레시피 공개하라고 하시고, SK하이닉스레 반도체개발기술도 오픈하라고 하시죠 그러면? 삼성 핸드폰 도면도 다 오픈하라고 하시고요. 골목식당 맛집들도 다 재료와 배합비 공개하라고 하세요. 월 넣을지 누가 알아요? 상식적인 제도를 만들어 주시든가, 도대체 이런 이상한 제도를 왜 실행하는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이라도 해주든가(설명 못하겠고 사람들이 따르지도

	않겠지만), 이런 요상한 제도를 만들기 전 현업에 질문이라도 좀 미리미리 이렇게 받아서 해주시면 좋겠네요. 제발 생각을 좀 하고 일을 하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막말로 그동안 몰래몰래 유해성을 가진 첨가제나 제품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MSDS에 모든걸 공개할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로 공개 안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더러운 마인드의 사업자가 정직하게 공단에서 하란대로 따라 할까요? MSDS는 관찮은척 가짜로 만들고 실제로는 유해한 성분넣은 제품들을 만들겠죠. 아무도 검사하거나 조사하지 않을테니까요. 작은 업체들일 수록 더 음성화 될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제발좀. MSDS에 모든걸 오픈하라는건 고객이든 제조업체든 유통업체든, 누구에게나 득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도 얻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탁상행정 그자체 입니다. 그리고 영업비밀로 해주는대신 각종 듣도보도 못한 서류를 만들어 제출해야하고 그것도 심사를 하는등의 조건들을 내고, 매년 각 수백개의 MSDS별로 비싼돈까지 내면서 MSDS를 영업비밀로 신청하고 관리해라? 세상에. 이게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대체 누가 이걸 따르겠습니까. 중소기업들은 돈도 없고 인원도 없습니다. 이런거 절대 못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현업에서 의견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을텐데, 이런 현실성없고 실현가능성도 없고, 도움도 안되는 제도는 여러분께서 다시 토의를 거쳐서 없애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뭘 잘못알고 있다면 반드시 회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	금속가공 윤활유 제조업체 입니다. 국내 브랜드만 자주 괴롭히지 말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윤활유들 MSDS부터 제대로 관리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제품들 상당수가 MSDS가 부실하고, 유해성 물질인 염소계 첨가제가 다량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염소계임을 알리는 정보를 전혀 오픈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드럼통이나 말통에 노란색 경고표지조차 부착하지 않고 수십년째 판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북청주에서는 제일 오래되고 큰 가게에서 '미국 마스터플루이드사의 트림'제품들은 염소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제지없이, 스티커도 없이 대량으로 10년넘게 판매되고 있음에도 그 누구도 제지하고 있지 않네요.(어느 가게에서 유통하는지 정확히 알고있으나 경쟁사 저격하는 글로 치부되어 버려질까봐 상호명을 적지는 않겠습니다. 여기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외브랜드 윤활유들이 MSDS 엉망으로 만드니까요) 솔직하게 국내 규정 따라가며 어렵게 제품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바보가된 느낌입니다. (염소계 첨가제 넣으면 정말 일이 쉽게 풀리거든요? 대신 고객들이 몸에 안좋다고 구매안하겠죠. 저희도 이제는 노란스티커 붙이

	고 유해성 설명하면서 판매하기 힘드네요. 정말 힘빠져요) 이럴거면 MSDS가 대체 무슨소용이고, 공단이나 정부에서는 이런걸 왜 그냥 두고 보고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한 국내업체들만 조지는 꼴이예요. 해외에서 수입되는 브랜드들에 대한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국내 브랜드들좀 도와주십시오.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한계가 와서 국내 업자들이 더 독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확실히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24	로그인 절차가 복잡함. 비공개 승인 심사에 대한 공개교육이 필요함.
25	온라인 자가진단이 불가능해 지면서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필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의 항목간 연관성이나 전체적인 평가보다 개별 항목에 대한 분리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26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7>에 대한 입증하는 자료로만 나와있고 양식이나 예제가 하나도 없으니 뭐 제출해야 할 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27	1. 비공개신청 - 비공개신청 관련 서류 제출 시 자료제출 진행사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진행 중 사항, 혹은 제출 서류 확인 등) - 가상계좌 정보 : 핸드폰이나 개인 연락이 아닌 홈페이지 내에서 입금상태 중이 아닌 계좌정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비공개신청 진행 시 제출 서류에 따른 업체 내에서 외부 공개가 힘든 자료일 경우, 대체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2. MSDS 제출 - 동일 물질 또는 제품의 수입자만 다를 경우, 해당 정보(수입자)만 수정하여 일괄적으로 물질 또는 제품의 MSDS 제출이 가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에 수입자 목록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자 정보와 그에 따른 MSDS가 개별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타의견 1. 국외 생산자도 원료 구매 및 혼합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기밀정보는 더더욱 얻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단순히 혼합물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자는 어떻게 MSDS와 CBI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선임자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비공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밀물질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조업체가 항상 기밀물질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않으며, 제조업체

	(한국이 아닌 다른나라)가 다른 공급업체(한국이 아닌 다른나라)로부터 기밀물질을 구입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급업체 또한 물질의 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며, 단순히 혼합공정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분자구조 및 IUPAC 이름 및 CAS No.는 기밀입니다. 기밀물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우며, 대체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MSDS 제출 또는 CBI 신청 시 성분을 MSDS 번호로 기입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급업체의 경우, 한국 내 사용자에게 성분 정보를 전체 공개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3. GHS 분류 : 회사의 데이터의 경우, 분류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지게 될 것이고, 회사가 그들의 제품과 위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단이 분류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4. 만약 고객의 제품이 복잡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 석유추출물을 설계하며 가공방법은 일반물질과 동일하지 않을 때, 물질을 얻는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일 경우,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예외 사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일부 고객사의 경우 SDS 제출 또는 비공개 승인 신청 시 규정에 관한 기준만 검토하도록 요청합니다. SDS의 경우, 회사 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SDS의 세부사항을 검토하지 않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SDS의 경우, 회사가 작성하고 회사가 작성 정보를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SDS 검토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6. “비공개를 유지하는 경우 얻게 되는 신청인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이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영업비밀로 인해 얻는 향후 ()년간 신청인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의 추정치: 한화 0원(근거포함)(별표 7,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필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의 정보의 경우, 비공개신청 진행 시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CBI 신청은 물질의 재무 수익성에 기초해서는 안되며, 비공개 손실에 대한 재무적 영향에 대한 초점은 정보가 보호되지 않는 경우 제 3자가 획득할 R&D 투자 손실 및 경쟁력과 관련이 있으며, 한국에서의 공개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노출 되면 안되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28	MSDS 에 왜 승인 번호를 붙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확실한 유해인자의 기준도 모르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선 당연히 MSDS 를 작성할 때 노하우가 되는 부분은 다른 회사에서 복제 등을 우려하여 당연히 가리고 싶은데, 그걸 이유를 들어가며 설명을 해야되니까? 심지어 돈을 내고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해야되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비공개 승인 신청의 요구 자료 등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기준치가 심합니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를 어떻게 증거로 내서 영업비밀을 신청합니까? 새롭게 개발하거나 수입한 제품의 향후 판매 시장 조사 등을 진행은 하고 있으나, 비공개 신청의 벽이 높아 한국 내에서 새롭게 무언가를 하고자 하려 해도 자료 찾느라 시간이 다 갑니다. 손을 못 댈 정도입니다. 대응하는 공무원들이 전문성도 없는 것 같고 애초에 궁금한 것이 있어 물어 보려 해도 연락도 잘 안 됩니다. 물어볼 것은 산더미인데 대답해 줄 사람도 없고, 특히 해외 제조사를 가진 회사에게 필요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민감하게 굴 수밖에 없는 영업 비밀에 대한 사항을 공개하게 되면 그에 대한 피해를, 그 책임을 누가 지나요? 그래서 비공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제출하려고 해도 통과되는 확률도 낮고, 반려도 1번으로 끝나는 게, 비공개 신청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고객에게 제품을 PR 해도 비공개 신청에 시간이 너무 걸려서 비즈니스 찬스가 없어집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MSDS 제출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제출하고 정부에서 딱히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하면 그냥 그걸로 끝인데 이럴 거면 왜 MSDS 를 제출해야 합니까? 유해인자 말이 아까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산안법이랑 환경부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등의 위험물의 공개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 외의 성분인 GHS 라벨이 분류가 되는 물질의 경우에는 전부 유해인자로 판단되어 MSDS 상에 기재해야 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GHS 라벨 분류가 된다고 해도 유독물질도 아닌데 그걸 왜 유해인자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법은 한국에 있는 화학물질 중소기업의 노하우를 지켜주지 않는 법률이라고 단언컨대 말씀 드립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사람이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몇 년 간, 화학물질의 취급이 사고 등으로 인해 법으로 엄격해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제어하는 법은 회사가 법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회사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법을 개정해주기를 바랍니다.
29	1. 유예기간의 적용 원료 사용 불가능 - 산안법이 개정되기 전 설명회에서는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원료에 대하여 MSDS에 비공개 물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 하였지만, 막상 시스템이 오픈 된 이후에는 물질을 모르면 작성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협력사에 비공개 물질의 신청 및 MSDS의 제출을 요청하고 있지만, 협력사에서는 유예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법을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노동부나 공단에 문의 해 봐도 방법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법은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시스템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2. MSDS 제공하기 기능의 부재 - MSDS 제공하기의 기능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아 타사의 비공개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할 시, 해당 제품의 MSDS를 작성하여 비공개 신청 및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상기 1.에서 유예기간 내에 대응을 해주는 협력사도 있지만, 정작 MSDS의 제공하기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습니다. 3. 그룹제출의 사용 곤란 - 그룹제출의 사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XML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해야 하지만, 매우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그림의 떡입니다. 사용방법도 나와있는 곳이 없으며, 간편하지도 않습니다.
30	저는 약 10건의 MSDS 비공개심사신청을 진행했었는데 심사담당자님들 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친절하신 분, 빠른 feedback을 주시는 분, 힘들게 일하시는 것은 알고 있으나, 급한 개정으로 인하여, 신규물질에 대한 MSDS 비공개발급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에 빠른 feedback 부탁드립니다.
31	당사제품의 MSDS의 제출시 100% 구성정보 확인이 불가 합니다. 불가한 이유는, 원료메이커에서 GHS 미분류물질 미 공개, 영업비밀물질 미공개입니다. 원료메이커에서 제공하는 제출승인번호 및 영업비밀 물질 승인번호를 당사 제품의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신청시 사용할수 있게 조치가 필요합니다. 당사 MSDS의 비공개 승인 신청 및 MSDS의 제출이 불가하여 제조, 영업활동이 불가합니다.
32	1.원료사-제조사 간의 유예 기한의 괴리로 인하여 제조사의 MSDS 제출 제도의 이행에 어려움이 발생.아래의 예와 같이 원료 제조사가 유예 기한까지 MSDS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제조사는 원료의 성분을 100% 알지 못하기 때문에 MSDS를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원료사 제품의 MSDS 제출 유예 기한 : 2026년 1, 제조사 제품의 MSDS 제출 유예 기한 : 2022년 1월 2.원료사가 성분을 영업비밀 또는 100%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국내 업체는 수입 또는 MSDS 제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비즈니스의 어려움 발생합니다. 3.해외 원료 제조사를 대신하여 수입자가 MSDS를 제출하는 경우, 공급자 정보 수정 요청 시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해당 원료가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 제조 용도로만 공장에서 사용된다면 수입자 정보 기재 없이 공급

	사(해외제조사)의 정보로 작성된 MSDS를 공단 측에 제출하였으면 합니다. 4.비공개 심사는 제품 기준이 아닌 성분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 성분이 1개이지만 그 물질이 10가지 제품에 들어간다면, 현행법 상 10가지 제품에 대해서 비공개 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비용 상승 및 행정적인 절차로 인하여 업무의 과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평법과 같이 성분을 기준으로 비공개 심사를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5.현행 법상 동일한 제품을 여러 업체가 수입하는 경우, 각기 다른 4개의 MSDS 가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있어 사용자에게 정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MSDS 적정성(적법)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MSDS 제출 승인 번호를 받았음에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에 맞지 않는 MSDS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문제 사항에 대해 제출자 혹은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출의 오류(예: 함유량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시스템적으로 제출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합니다.
33	A사 제품 X(B사는 비공개)를 원료로 하는 B사 제품 Y에 대해 B사가 비공개 신청을 할 때 X의 MSDS를 사용합니다. X의 MSDS 작성 조건(단일 물질일 것, 당국에 물질정보를 공개하고 있을 것)이 공단에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34	1) 산안법 MSDS 비개시 승인신청시 대체 명칭의 설정은 제조업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설정 방법을 재검토해 주었으면 합니다. - 법 104조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합물에 대해 MSDS에의 기재를 회피하는 경우는 환경부 고시 「자료 보호 신청서의 작성 방법 및 보호 자료 관리 방법등에 관한 규정」의 명칭 방법에 따라서 대체 명칭을 설정합니다.그렇지만, 규정의 방법이 꽤 획일적이고, 대체 명칭으로부터 그 구조를 비교적 용이하게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동업 타사에 의해서 영업 비밀이 해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한국에서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면 그 영향은 세계에 파급되기 때문에 공급회사가 받는 피해는 지극히 심대합니다.일본·유럽·미국에서는 영업 비밀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관용적인 명칭의 사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2) 산안법 MSDS 비개시 승인신청 시, 영업 비밀 요건에 대해서는 비공지성에 대해서만 검토해 주었으면 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기준」의 별표 7에서는 영업 비밀의 필수 요건으로서 비공지성, 비밀 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비밀관리성은 비공지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밀관리성의 저하에 연동해 비공지성이 저하되므로 비공지성을 파악하면 충분합니다. 또, 비밀 보호에 대한 대책은 어느 기업에서도 2중 3중의 보안이 당연하며, 비밀 관리성을 얻는다

해도 그 정보의 유용성은 극히 부족합니다.비밀관리성은 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경제적 유용성에 대해서는 수입자의 비즈니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비공개 승인 신청 단계에서는 수입자라도 향후 비즈니스 전개는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공 정보의 신뢰성은 갑자기 낮아집니다.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해서는 유용성이 높은 필수정보로 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공지성의 정보가 있으면 영업 비밀의 입증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 산안법 MSDS 비개시 승인신청시 영업비밀에 대한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더 필요하면 갱신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규제 대상 물질의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의 영업 비밀 승인 유효 기간 5년의 설정을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산안법 112조에 영업비밀 승인유효기간이 5년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해외 기업에서는, 신청에 100만원정도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갱신에도 별도 비용이나 노력이 듭니다.또한 산안법 제110조 제3항에서는 제품명이나 GHS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구성성분의 물질명칭 및 함유량 및 이들 위해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절차의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은 영업비밀 승인대상의 주요항목과 합치합니다.110조에서 변경시마다 절차가 필요한 가운데 영업비밀 승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승인의 재신청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규제이며, 실질적인 의의도 없습니다. 또, 법령의 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한 번 인정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참가하는 기업의 부담이 많아져 한국 진출을 방해해 결과적으로 해외로부터 고기능의 원료를 요구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이 됩니다

4)산안법 MSDS선임서 선임서 사본제공 의무를 폐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외 제조자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임해 MSDS 제출이나 비공개 승인 신청 혹은 MSDS 작성을 수행했을 때, 선임서 사본을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산안법 시행 규칙 제 166조 제 5항에서 의무로 되어 있는데 산안법 Q&A에 명기되어 있듯이 선임된 자의 정보는 MSDS에 기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임서가 없어도 MSDS를 확인하면 선임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또, 당국 제출이나 비공개 승인 신청에 의해서 얻을 수 있던 등록 번호나 승인 번호에 대해서도 산안법 시행 규칙 제 160조 제 1항 및 동규칙 제 162조 제 6항에 따라서 MSDS에 기재되어 수입자에게 제공됩니다. 선임서 사본 제공은 무용하며 이중규제나 다름없습니다.

4)산안법MSDS선임서 사본제공 의무를 폐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외 제조자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임해 MSDS 제출이나 비공개 승인 신청 혹은 MSDS 작성을 수행했을 때, 선임서 사본을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산안법 시행 규칙 제 166조 제 5항에서 의무로 되어 있는데 산안법 Q&A에 명기되어 있듯이 선임된 자의 정보는 MSDS에 기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임서가 없어도 MSDS를 확인하면 선임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또, 당국 제출이나 비공개 승인 신청에 의해서 얻을 수 있던 등록 번호나 승인 번호에 대해서도 산안법 시행 규칙 제 160조 제 1항

	및 동규칙 제 162조 제 6항에 따라서 MSDS에 기재되어 수입자에게 제공됩니다. 선임서 사본 제공은 무용하며 이중규제나 다름없습니다. 5)MSDS 양도 및 제공방법을 MSDS 제출 시스템내로 흡수시켜 주십시오. 산안법 113조에서는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13조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양도 및 제공방법에서 등기우편이나 정보통신망 및 전자문서로 송부하고,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양도자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의 중요성에 비하여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어 삭제를 희망합니다. 양도확인작업이 필수불가결이라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수령확인처럼 메일수신자와 발신자를 넣어 MSDS제출시스템에 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양도에 관한 규정은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품을 구매한 그 나라의 다른 수출자가 수출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에 대해 제대로 파악 되지 않아 수입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양도시, 물질안전보건자료전달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 선임받은 자가 MSDS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정보(이후 확인되는 정보를 추가로 입력 가능하도록 설계)를 입력하거나 수출자 정보(=원료제품에 대하여 국외제조자가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를 입력합니다. 6)성분(원료물질)에 대한 공유 및 입력방법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내 제조사는 성분 입력을 하거나 LOC를 제출하지 않고 공유된 MSDS 번호를 입력하여 이를 쉽게 해결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MSDS 제출 프로그램에 MSDS 번호를 입력하면 이미 제출한 제품의 GHS 분류를 불러와 분류물질에 대하여 새로 제조한 제품 함량을 기준으로 새롭게 분류하는 기능을 탐색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해외 제조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출한 MSDS가 다른 해외 제조자가 제조한 혼합물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국내 업체가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MSDS 제출을 위해 성분 정보를 요구합니다. 이 때 원료는 수입자 대신 그 원료의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입력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입력창을 마련해 주십시오 7) 연구개발용 MSDS비공개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용에 있어서는 화평법의 신규물질면제과 화관법의 확인명세서 제출이 사후제출이 가능하고, 산안법에서도 신규물질신고에 있어서 사구 신고가 가능하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연구개발용의 MSDS비공개심사도 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사후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35	비유해성 영업 비밀 물질의 경우 영업 비밀 심사 대상이 아니기에 대체명 사용 승인 신청이 불가함. 영업 비밀 물질이 고객사로 전달되어 고객이 해당 물질을

	포함한 제품 제조시, MSDS 제출을 위한 물질 정보 공개가 필요한 상황임. (대응 안) 비유해성 물질의 경우 승인 없이 대체명 사용이 가능한 점을 활용 해 공급자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후 부여 받은 제출 번호를 기재한 대체 명 MSDS를 활용해 고객은 영업 비밀 물질에 대해 대체명과 제출 번호를 기재해 제출하면 인정될 수 있어야 함.
36	1. 영업비밀 신청시 다회 보완 허용 (보완 횟수가 1회로 제한되어 있어 영업 비밀 신청에 대한 부담감이 큼.) 2. 공급자와 하위사용자간 유예기간이 다른 경우 필요 정보를 얻지 못하여 MSDS 제출이 불가함에 대한 대안 필요. 3. 혼합물의 비공개 승인 심사 신청시 유해성 분류되지 않는 성분은 LOC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
37	기존 판매품에 대한 유예기한 부여에 따라 원료 공급사들의 빠른 대응 기피 (개정 산안법 적용MSDS제공이 안됨, 물질정보 비공개상태 유지)로, 당사 개선개발품에 대한 비공개 승인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원료사에서 유예기한 적용 받은 원료가 당사의 개선개발품에 사용시 동일한 유예기한 부여를 받을 수 있어야만이 개선개발품에 대한 MSDS발행이 가능해 집니다. 또한 시스템 에서 MSDS제공하기 메뉴가 현재 실행불가이므로, 빠른 개선방안의 제시를 요청 드립니다.
38	1. 한국에서는 신규화학물질이라 MSDS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려 합니다만, 유해인자가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승인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 비공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수입 후에 위탁 제조를 의뢰할 예정이 고, 위탁 제조처에서도 MSDS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유용성 모두 완전히 지켜지고 있는 물질이 신규화학물질입니다. 다만 신규화학물질에 고분자화합물이라 해외 제조사 의 국가에서 저우려고분자 면제를 받았기때문에 시험자료가 없고 유해성도 없습니다. 정작 비공개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신규화학물질이 유해인자가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수급에 매우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입니다. 2. 고분자화합물의 단량체정보에서 유해성이 있다는 이유로 고분자화합물이 유독물질이 아닌데도 비공개승인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화평법에서도 고분자화합물은 고분자를 등록, 면제를 하고 있지 단량체를 등록, 면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단량체에 유독물질이 있어도 함량이 0.1프로 미만에 잔류하지 않는 단량체임에도 비공개승인을 못하게 한다면 어떤 물질이나 다 오픈하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발 현재 산업계 상황을 잘 파악해서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융통성이 없으면 힘없는 작은 회사만 죽어라죽어라 하는 제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9	1. MSDS 비공개승인 관련하여, 비슷한 제품에 대해 여러 차례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에 대해 담당자마다 보완 사항이 달라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입증자료에 대해 고시 별표7에 서술되어 있으나 작성 예시 등, 어느 정도까지 상세히 적어야 하는건지 제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2. 유해위험성이 없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MSDS 비공개 승인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규화학물질은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유용성에 모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게되는데, 유해위험성이 없거나 수입톤수에 따라 자료없음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또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유해위험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제조자는 판매 안하고 만다 라는 입장의 제조사도 많아서 작은 국내 회사는 물질 수급이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3. MSDS 제출의 경우에도 국외제조자로부터 수입할 경우, 수입자는 LOC를 사용해서 제출한다고 해도 수입자가 단순 혼합해서 하위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되면 수입자가 MSDS를 재제출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LOC를 사용해서 제출을 면제받은 유해위험성이 없는 물질에 대해서도 IT 입력을 위해 국외제조자에게 문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외제조자는 수입자에게 해당 물질정보를 공개를 꺼리기 때문에, 수입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LOC 연계가 가능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40	해외에서 한글 MSDS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자체적으로 번역하거나 안전보건공단의 MSDS를 조회합니다. 주로 안전보건공단의 MSDS 정보를 조회하는데, 개정일자가 오래 된 것들이 많습니다. 비공개 신청 절차 까다로워요...
41	비공개 승인을 위한 제반 서류가 너무 많고, 절차가 복잡하기에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공단에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비공개심사 승인 제도가 오히려 MSDS의 허위 작성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42	비공개 승인제도에 동의합니다
43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지니스라는건 일정대로 예정대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갑작스럽게 진행될때가 더 많습니다. 고객사의 요구사항대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비지니스를 날려서 막심한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것도 아닌 MSDS 비공개승인때문에 비지니스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산업계의 잘못은 아니지 않나요? 물론

	모든 건이 갑자기 진행되는건 아니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당국에게 협조를 구하고 싶을때가 있지않습니까? 그런때에 제출한 비공개승인건의 담당자를 알지못해 협조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담당자를 알 수 있는건 보완사항이 생겼을때 알 수 있어 제출한 신청인의 피치못할 사정에 대해 어필할 수 없는부분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제출건에 대해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실무자가 그 건에 대해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환경부의 IT시스템은 신청자의 입장에서 편리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안전보건공단의 IT시스템에서는 신청자의 입장에서 편리한 기능이 단 한개도 없는것 같습니다. 물론 담당자들에게 문의전화도 많이 오는 것을 대비하여 보완이 발생했을때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완이 발생하는 비중을 확인해 보십시오. 보완발생없이 승인되는 건의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보완이 나와서 담당자를 알게 되는 거라면 미리 담당자를 알게 되어도 상관없지않습니까? 꼭 이 부분 인지하시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승인신청의 기간을 법적으로 줄여달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니깐요. 다만 급박한 사항에 있어 담당자와 컨택할 수 있도록 비공개승인을 신청했을때 담당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44	비공개신청 시에 입금 완료 후 심사가 시작되거나, 보완없이 승인된 경우에 접수번호, 담당자 연락처가 확인이 불가하여 특이 사항이나 검토 내용에 대해 문의가 필요한 경우,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화평법에서는 자유롭게 연락이 가능하나, MSDS 비공개승인에서는 어려우므로 담당자와의 연락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45	비공개승인 심사 신청 후 담당자 확인이 불가능한가요? 제출 후 보완 전에 특이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빠른 업무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개선 부탁드립니다. 접수번호가 존재하지 않아 제품명으로 확인해야하는 점이 혼란스럽습니다. 개선 부탁드립니다.
46	아직 사용 초기라 불편사항 없음
47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송부드리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당 사는 항공기 정비를 직접 수행중이며 항공기 정비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은 항공기 제조사의 매뉴얼과 국내 관련 법령에 따라 규격화된 특정 화학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예로 접착제도 일반 공산품이 아닌 제조사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합니다. 국내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품은 직접 수입하고 영문 MSDS를 번역하여 근로자에게 제공중에 있습니다. 자가 사용 목적으로 소량(연간 사용량 1kg 미만)을 직수입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에 대한 함유량 전체가 포함된 MSDS 확보 또는 업체 확인서(LOC) 수신이 일반 사용자에게는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국내 또는 기타 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수도 없는 처지로 항공기 정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해외 제조업체에 관련 내용을 보내도 답변이 없거나 국제기준에 맞지않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제출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법 조항이 있으나 다수의 제조업체로부터 국외제조자로 선임받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소량을 직수입하는 당 사의 입장에서는 유용하지 않은 조항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자가 사용 목적 소량 수입사용자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48	MSDS제출시 mass upload의 경우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기 불편하게 [코딩]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음. 실무자는 코딩을 이용하기 어려우며, 코딩 시 불필요한 정보를 다 입력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한건한건 제출할때는 입력하지 않는 정보들) 그리고 업로드 속도도 현저히 낮으며, 제품명을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함 (오류발생)
49	1. 제출 시 그룹제출의 코드 불편의성 2.비공개 승인 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MSDS 완전성에 대한 심사로 실제 목적과 맞지 않는 심사 및 이에 따른 업무 지연이 발생 그룹제출 기능을 좀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발 및, 비공개 심사는 비공개 항목에 대한 심사만 진행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50	모든 MSDS 를 한군데 모아 건강 유해성 확인 등 관련하여 필요할때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본 사이트 등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빠른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51	해외 수입물질에 대한 비공개 승인 신청시 정보제출을 꺼려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체함량의 1% 미만 미량일 경우에 비공개 승인 신청이 필요하면 더욱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제조사의 구매품인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제작이여서 (연구) 구매 물량이 적을 경우에도 회신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귀사는 직수입한 화학물질을 혼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형식의 제조업체입니다. 일부 직수입 화학물질의 경우 자재 공급사에서 영업비밀의 이유로 화학물질의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자재 공급사의 경우, 기 생산 제품이기에 유예기간을 확보하고 있지만 귀사와 같이 자재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수입자재를 혼합하여 신규 제품을 개발 및 양산하는 경우 수입자재에 포함된 화학물질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MSDS작성 및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와 대형고객사들의 니즈를 만족시키며, 귀사의 법률 동향을 위와 같은 에로사항에 의하여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올바르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포럼 참석자 제출 의견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심사제도 발전방안 마련 발표자료

- KOTRA 외투기업고충처리실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 관련 기관에 대한 개선 건의 및 제도개선 권고 등 외투기업의 고충해결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각종 화학관련 규제들이 강화되면서 화학분야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애로가 다수 접수된 바, 우리 실은 이를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왔음
-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심사제도와 관련해서도 많은 외투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개발 화학물질의 비공개승인심사에 대한 문제를 다수 제기해왔음
- 기업들은 화학물질 연구개발 제품공급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신속한 샘플 공급이 필요함에도 영업비밀 승인에 대한 절차로 개발이 지연된다는 의견을 지속 피력함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 시장에 출시되기 보다는 일회성 실험 후 폐기되는 경우가 훨씬 많음에도 연구개발용 샘플의 수입을 위해 비공개 물질에 대한 승인 및 준비를 거쳐야하여 기업에 매우 큰 부담이 되며,
 - 특히 R&D 영업비밀 신청시 MSDS 자체의 적정성 심사로 심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바, 비공개 심사제도를 유지한다면 상업용 제품의 MSDS 심사와 차등을 두어 비공개 자체의 적정성 및 총칭명의 적정성만을 심사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함
 - 또한 우리나라의 MSDS 총칭명 명명법은 여타 국가의 대체명칭 명명법과 달리 동종업계 전문가라면 영업비밀 성분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있다는 입장임
- 이에 우리 실은 총리실 주관 규제개혁챌린지 안건으로 연구개발 물질 MSDS 비공개승인 심사 제도 개선 건을 제출한바 있으며, 다른 나라의 연구개발 물질 관련 MSDS 제도 조사를 병행한 바 있음
 - 화학규제 관련 주요 선진국 및 화학물질 연구개발 관련 우리나라 경쟁국(미국, 독일, 캐나다, 일본, 중국, 대만)을 선정, 현지 로펌, 법률 컨설팅 업체, 코트라 무역관 전문 리서치 인력 등을 활용, 해외 제도 조사
- 조사 대상 국가중 소량에 대한 예외를 둔 캐나다를 제외하고(미국은 in-house 분석용 물질은 제외), 모든 국가가 연구 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해 MSDS 작성의무가 있었으며, 제출의무는 없었음

- 다만 영업비밀로 MSDS를 일부 비공개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별도 심사 절차를 가지고 있는 한국, 캐나다, 독일, 대만에서는 MSDS를 당국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 이 과정에서 MSDS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유해화학물질 외 다른 물질 정보를 제출하는 국가는 한국과 캐나다뿐인 것으로 파악됨
-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연구개발물질 관련 MSDS 비공개 심사 제도로 다수의 국내외 화학업체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바, 첨단 화학물질 연구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건의 사항]

- 연구개발 샘플의 경우 통상 매우 작은 양으로, 물질에 대해 잘 아는 소수 고학력 연구인력이 특정 장소에서만 사용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음을 고려, 일정 수량 이하 **연구개발 물질에 대한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제도 면제**
 - 당초 입법예고된 산안법 시행령에서는 연간 100kg 미만 제조·수입되는 연구개발 화학물질은 MSDS 작성·제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원안대로 할 경우 업계 애로를 상당 부분 해소 가능
 - 연구개발용 물질에 대한 MSDS 작성 의무를 면제하지 않더라도, 유해·위험도가 높은 화학물질은 이미 비공개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그 외의 물질에 대해서는 비공개 승인 제도 대상에서 면제하고 기업에서 자체 판단할 수 있기를 희망
- 만약 연구개발용 MSDS 작성 혹은 비공개승인 면제가 어렵다면 보다 **규정을 완화하여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필요
 - 연구개발용 제품·샘플의 경우 영업비밀 승인 물질의 수입제조 이후 일정기간 내에 승인을 받거나, 영업비밀 승인 신청을 사전에 할 경우 승인 전이라도 수입제조가 가능하도록 개정
 - 또한 영업비밀 심사시 **연구개발 물질의 경우 상업용 제품의 MSDS 심사와 차등**을 두어 MSDS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제외하고, 비공개 자체의 적정성 및 총칭명의 적정성만을 심사하여 신속한 심사 진행
 - 현재 주요국보다 훨씬 더 상세한 대체물질 총칭명 규정으로 첨단물질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 수준으로 완화하여 영업비밀 보호 및 R&D 촉진 필요

MSDS 작성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 개선 고려사항

1. MSDS 작성 및 제출 대상 여부 확인

시행령 제86조 적용제외 제18호에서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서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의 범위 확인

(예; H-beam 절단시 분진 발생 → H-beam은 MSDS 작성 대상?)

→ 완제품은 GHS 분류기준을 적용 어려우므로 제104조 및 시행규칙 별표18의 화학물질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로 MSDS 작성 및 제출 비대상으로 판단 고려

2. 산안법 제113조 국외제조자가 선입자(OR)에 의한 정보제출

1) 선입 서식내 선입 물질 또는 선입 제품에 대한 명시

국외제조자가 한국내 수출하는 모든 제품을 대리하는 것이 아닌 선입받은 물질 또는 제품에 대해서만 작성 및 제출하므로 이에 대한 선입 서식 또는 MSDS 작성 및 제출 대상 제품에 대한 법적 관리 범위 제한

2) MSDS 작성 및 제출시 공급자 정보 기재

- OR로 제출시 공급자 정보작성시 MSD S작성자로써 OR정보 기재

수입자 정보도 반드시 기재 필요. OR은 수입자 정보만 파악할 수 있으며 수입자의 판매처까지 파악 어려우며 구매자도 OR정보만 기재된 경우 수입(공급)자 정보와 상이하여 혼란 우려

3. 비공개 승인 신청

1) 국내에서 구매한 제품을 이용하여 혼합물제품 제조하는 경우 이전 비공개 승인 건으로 MSDS 기재 가능하도록 변경 필요

2) 비공개 승인 신청 철회 및 유해성 정보 수정 등의 변경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3) 비공개 승인신청서류 개선

붙임서류의 서식 부재 → 고용부 고시 제2020-130호 별표 7의 내용 포함한 영업비밀 입증자료 서식 작성

4. MSDS 시스템 및 온라인 민원

1) 고용부 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시 담당자 개인정보(자택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 → 업체 정보 기재방법으로 변경 필요

2) 마스터 ID생성시 담당자 개인정보 기재 → 담당자 이메일정보 기재로 대체 및 알림정보도 이메일로 송부

3) 마스터 ID 로그인시 ID, PW, 공동인증서, 휴대폰/이메일 인증단계 복잡 → 공동인증서 단일 로그인 등 개선

구분	의견
대체자료 (CBI) 승인 신청	이미 승인된 비공개신청 물질이 다른 제품에 동일하게 포함된 경우, 제품명 추가하여 기존 승인 번호 재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개선 필요. ■ 현재는 ‘신규로 비공개 신청하기’ 혹은 ‘연장’ 신청만 시스템상 구현이 되나, 동일 물질의 중복 검토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기업의 준비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 ■ 화평법에서도 물질을 등록하고,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가 있듯이, 비공개 승인 이후 추가 확인이 되는 제품에 동일물질의 비공개 신청 시 간소화 제출이 필요해 보임.
대체자료 (CBI) 명명법	현재 화평법 명명법 (제8조)을 산안법에서도 적용하여 신청 및 승인이 이루어 지나, 해당 명명법은 화평법에서도 물질 유추가 가능한 명명법 입에 따라 이전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음. 그런데 이 명명법을 MSDS 작성에도 적용하여 업체에서 영업비밀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더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음. 화평법 결과통지서의 경우 제품명과 연결하여 다수의 고객사에 제공하거나 웹사이트 등에 공개하는 경우가 없으나, MSDS의 경우 제품과 바로 연결되고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근이 가능한 자료로 물질명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경우 영업비밀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어 회사 기밀유지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음. 현재의 명명법에 따라 CBI 물질명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물질을 잘 아는 경쟁사의 연구원들이 보았을 때 쉽게 어떤 물질인지 유추가 바로 가능한 정도임. 모체의 개수는 총칭명으로 명명할 수 없도록 하고 substituted는 1회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등 명명법의 변경 범위가 넓지 않아 물질 개발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현행 명명법 체계로는 물질 정보를 제대로 보호할 수가 없어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므로, 명명법(Nomenclature) or 일반 명칭(generic name) 으로도 대체물질 승인 신청 및 승인이 가능 할 수 있도록 법적완화가 필요해 보임.
대체자료 (CBI) 면제 항목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경우, MSDS 제출 대상은 아니나, ‘영업비밀’물질의 경우 승인은 면제가 되지 않고 있음. ■ 연구개발 제품/샘플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은 양의 화학물질을 수입 또는 제조하며 수입/제조된 화학물질을 이해도가 높은 특정 고학력의 연구인력들이 특정 장소에서만 사용하므로 화학물질의 누출 우려가 크지 않고, 연구개발은 시급을 다투는 매우 긴급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영업비밀 승인에 대한 법규적 절차 이행으로 개발이 지연되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량의 연구개발용 제품/샘플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승인의 대상에서 면제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소량의 연구개발용 제품/샘플들에 대해 영업비밀 승인의 대상에서 면제시켜 주는 것이 어려운 경우, 화평법상에서도 연구개발용에 대해서는 수입 이후 14일이내에 신규물질에 대한 R&D 면제 제출이 허용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되었으므로, 산안법도 연구개발용 제품/샘플의 경우 영업비밀 승인물질의 수입/제조 이후 유예기간 (예를 들어, 연구개발용 샘플/제품 내 영업비밀 승인은 제조/수입 후 6개월 이내 승인 또는 1개월 이내 신청 등)을 적용하여, 연구개발 제품/샘플을 빠르게 수입/제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연구개발용의 경우, 단순 test 용으로 수입을 했다가 성능 평가 후 시장에 출시되는 경우보다는, 성능평가 후 폐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연구개발용 샘플들을 일회성 수입을 위해 비공개 물질에 대한 승인 및 준비는 기업에게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음.
MSDS 제출 관련 확인 서류	LoC 작성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및 안내 필요. 노동부에서 발간한 ‘물질안전보건자료’ Q&A의 47page의 내용을 보면, 법 제1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학물질 관련 확인서류 (LoC)’를 작성할 때 국외제조자의 내부 직원으로서 ‘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학물질 관련 확인서류 관련서류의 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이라면 서명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국내직원이 될 수 없다는 ‘환경공단’의 답변 받음. 단, 일반 적으로 해외제조자 혹은 본사가 외국에 있는 외국계기업들은 수입해오는 자사 제품의 성분을 내부 전상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서류에 대한 LoC를 작성하고 있는 기업이 대다수임. (예를 들어, 화관법 LoC 작성.) 즉, 내부 process에 따라 성분을 확인하고, 본사를 대신하여 confirm이 가능한 경우, LoC 서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가 보다 명확한 해석이 필요해 보임.

6. 사례수집내용

의견서

연구과제명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심사제도 발전방안 마련
의견서	1. 제조업체의 전 성분 직접 제출의 어려움 개선 국내 혼합물 제조 업체들이 다양한 원료를 수입, 구매하여 혼합물 제조하고 있음. 원료성분이 영업기밀로 공개가 되지 않은 경우 제조된 혼합물의 100% 성분을 모두 파악할 수 없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2항에 따라 전성분을 제출해야만 MSDS 제출이나 비공개 승인이 가능함. 원료 업체들은 영업기밀 유출의 우려로 전성분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예정된 확대적용 유예기간 2026년 1월 16일 이후에도 혼합물 제조 업체들은 전성분을 알기 어려워 법 준수가 어려움. 제안 : A. (초기 대책) 하위 혼합물 제조자가 원료 성분 대신 원료 공급업체의 MSDS (구 버전이라도 허용)를 업로드하여 MSDS 승인 받음. B. (이후 대책) 원료 공급업체가 MSDS 승인번호를 먼저 취득하고, 하위 혼합물 제조자가 혼합물의 MSDS 승인을 진행할 때, 원료 MSDS 승인 번호를 해당 원료 성분 대신 제출. *화학산업에는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길고 다양한 공급 체인망이 있음. 현 원료 공급업체도 상위 공급업체로부터 전성분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상기와 같은 대안이 절실히 필요함. 2. 연구개발용 샘플 제공의 어려움 개선 <u>1) 직접 수입자의 어려움</u> 비공개 승인 진행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연구개발 민첩성이 저하되고 시장에 적절한 샘플을 적시에 공급하기가 너무 어려워 기업의 연구개발 및 판촉 활동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음.

의견서

연구과제명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심사제도 발전방안 마련
의견서	1. 하나의 제품에 포함되는 비공개승인 물질들에 같은 비공개 승인번호를부여하기 때문에 비공개 승인을 받은 물질도 다른 제품에 포함될 시 다시 비공개승인을 다시 받아야 함.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비공개물질을 메인으로 모든 제품에 포함할 시 한 물질 때문에 모든 제품에 대해 그 물질에 대한 비공개 승인을 받아야 함. 제품별이 아닌 물질별비공개 승인번호 부여가 더 효율적일 것 같음. 2. 제도상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 상의 문제이지만, MSDS 제출을 위해 로그인할때 이메일 인증 혹은 휴대폰 인증을 해야하는데 한 사람의번호와 이메일만 등록 가능. 그 담당자가 부재시 일정기간 번호 변경도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때문에 담당자 부재시 다른 사람이 대체로 일을 진행할 수가 없음.

의견서

연구과제명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심사제도 발전방안 마련
의견서	1. 비공개 승인심사 기한의 연장 1,000 톤 이상의 기존제품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2년 1월 16일 이전까지 MSDS를 제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승인도 해당 기한 전에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1) 비공개 승인 신청서류에 대한 요구항목이 세부적이고 다양하여 많은 부서들과의 사전준비가 장기간 필요하고, 가이드선의 부재로 인해 서류 작성·검토 시간이 상당 소요되는 점; 2) 그럼에도 시스템 오픈 후 서류준비/승인의 물리적 시간이 1년도 채 안되는 점; 3) 시행 첫해이므로 신청자측/심사자측 모두 수차례 시행착오 혹은 보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점; 4) 다른 주요법 기한(예: 화평법상 1,000 톤 이상의 공동등록, 살생물제법상 기존 살생물질 등록)과 중복되어 산업계의 인력이 부족한 점 등의 상기 이유로 인해, 기존 판매되는 제품의 해당 기한 내 비공개 승인에 대한 문제가 이미 야기되고 있으며, 대규모 비즈니스들의 중단 등의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0 톤 이상에 대한 기한을 연장하거나, 해당 기한 내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면 최종결과 시까지 잠정 승인인정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의견서

연구과제명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심사제도 발전방안 마련
의견서	1. 연구/개발 목적의 케미칼 구입 시, 해외공급사로부터 성분정보 수신 어려움 [경고 있는 상황] 연구/개발 목적의 케미칼을 구입하기 위해, 여러 해외공급사들에게 성분 공개요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요청하고 있으나 실제로 회신을 해주는 해외공급사 아주 드물고, 회신을 해주어도 매우 늦게 해주는 상황 [제안] 연구/개발 목적의 케미칼을 구입하는 경우, 연구/개발 목적임을 설명하는 서류를 수입자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토록하고,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는 케미칼의 MSDS 작성의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2. 연구/개발 목적의 케미칼의 GHS 라벨 영문표기 [현재 규정] 연구/개발 목적의 케미칼 MSDS 는 영문으로만 표기해도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으나, 그 케미칼의 GHS 라벨은 영문으로 표기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안] 연구/개발 목적의 케미칼 MSDS 는 영문으로만 표기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으므로, 그 케미칼의 GHS 라벨을 영문으로만 표기해도 된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국내 수입자가 MSDS를 작성은 할 것이며, 이 MSDS를 영문으로 표기할 것입니다._사유:한국에 있는 연구소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연구원들이 상주함.)

의견서

연구과제명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심사제도 발전방안 마련
의견서	1) MSDS 작성 및 제출 시 겪는 구체적 사례 및 현황 - 신규 도입 제품의 경우 법령 상 수입 전 제출이 원칙이고, 사업적 측면에서 보면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가도 바로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물량 부족등으로 매우 신속하게 도입이 필요한 경우 등 예측이 매우 불안정한 경우가 있음. - 특히 외부 업체로부터 생산되어 수입하는 신규 도입 제품의 경우 공급 시 유해성분을 포함한 전 성분을 영업 비밀보호를 사유로써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며, 법령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법상 제출 기한을 준수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 - 특히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시급성과 요구되는 자료의 Gap 차이가 상당한 만큼, 타법을 참고하여 신규 도입 제품의 MSDS 제출의 일정기간의 유예기간 내 제출(혹은 일정기간 내 사후 제출)을 허용하고, 궁극적으로 환경과 인체에 유해위험이 적은 연간 1톤 이하의 수량의 신규도입에 대해선 전면적으로 제출 면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함 2) 비공개 승인 시 겪는 구체적 사례 및 현황 -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아닌 연구개발 면제의 경우에도, 최근 화학법령의 강화로 인해 많은 고객사들이 MSDS를 납품 시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개정된 법령에 따라 모든 유해성분을 공개해야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일부 영업비밀 성분의 비공개 승인은 거의 필수 요건이 되어 가고 있음

- 기업의 입장에서 연구개발 형태는 상당히 다양함: 품질향상을 위한 단순 시료 분석부터 양산 전 마지막 시생산을 위한 사용 등, 이에 따라 도입에 대한 시급성 요구수준도 매우 차이가 있음. 특히 **단순 샘플 수입 시 수행하였던 비공개 승인에 예상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제품 개발 /검증 과정에서의 예상치 못한 지연을 경험 하였음**
- 비공개 승인에 기본적으로 2주 이상 소요가 되며, 이는 앞서 언급한 도입의 시급성의 요구수준을 고려해 보면 비 현실성이 큼. 따라서 **연구개발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연구개발 제품에 대한 비공개 승인은 장기적으로 폐기해야** 해야 한다고 사료되나 법령 존치 시 연구개발도 용도에 따라 간소화 등록 등 (단순 샘플 사용 등에 한하여)으로 **승인 소요시간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사료됨.**

의견서

연구과제명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심사제도 발전방안 마련
의견서	1. 국내 위탁 수탁 제조 국내에서 위탁 수탁 계약을 맺고 제조하는 경우 수탁자는 제조 제품의 100% 구성성분을 알지 못하므로 MSDS를 제출하기 어려움. 위탁자가 MSDS 제출 및 기업비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OR과 같은 제도 필요 2. Indirect sales - MSDS 제출 국외 기업(1) 제품 A (MSDS내 a성분만 공개)를 국외에 판매 -> A 원료를 사용하여 블렌딩 제품으로 B 제품 제조-> 국내 수입된 경우 : 국외 기업(1)에게 a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에 대하여 LoC 받기 어려움. 따라서 B제품에 대해 MSDS 제출하기 어려움 : 제품 A의 MSDS를 첨부하는 것으로 LoC를 갈음하는 방식 등 해결 방안 필요 3. Indirect sale - 기업비밀 승인 신청 국외 기업(1) 제품 A (MSDS내 a성분을 a'로 일반명을 써서 작성한 경우)를 국외에 판매 -> A 원료를 사용하여 블렌딩 제품으로 B 제품 제조-> 국내 수입된 경우 : a성분에 대해 국외 기업(1)의 OR을 통해 국내 기업비밀 승인 신청을 요청하는 것이 제품 B를 수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국외 기업(1)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제품 B가 국내에 수입되는 방법은 전무하다. 제품 B에 a'일반명을 쓰도록 하고 제품 A의 MSDS를 첨부하는 방식 등으로 해결 방안 필요

4. 새로운 국외 제조자가 생긴 경우

기존 국외 제조자와 국내 OR을 맺고 나서 새로운 국외 제조자가 생긴 경우 국내 OR contract을 수정한 경우, 선임사실 신고증 재제출 필요 여부에 대한 가이드 부재 : 만약, 선임사실 신고증을 재제출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선임번호는 변경되면 안됨

5. 기업비밀 승인 신청 - 신규물질의 경우

- 환경부 신규물질 등록을 완료 한 경우, 해당 신규물질에 대해 기업비밀 신청을 간소화 하는 등 환경부와 협업 요청 (KOSHA에서 일반명만 확인하는 등)
- 신규물질의 경우 일반명 작성할때 더 일반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로 개발한 물질에 대해 타 업체에 신규물질에 대해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야 함

6. 기업비밀 승인 신청 - 제품명 추가 가능

기업비밀 신청 후 해당 제품에 대해 새로운 제품명이 생성 된 경우, 사이트에서 제품명 추가로 기존에 승인받은 번호 연동 가능하도록 하여 동일 제품에 대해 중복하여 기업비밀 승인신청 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 필요함

7. 기업비밀 신청 - 물질 연동 가능

제품 A에서 a물질에 대해 기업비밀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제품 B에서 a물질을 기업비밀 승인을 받아야 할 때, 제품 A에서 받은 a의 기업비밀 승인신청 번호를 연동하여 제품 B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함.

8. 기업비밀 승인 신청

샘플로 기업비밀 승인 신청을 받은 후, commercial product 로 다시 기업비밀 승인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 commercial 때만 제출을 요하는 서류 (별표 7)만 검토하는 것으로 빠른 검토 과정이 필요

의견서

연구과제명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심사제도 발전방안 마련
의견서	- MSDS 작성 및 제출 시 제도상의 문제점과 기업의 문제가 되는 사례: 화학제품은 대부분 혼합물로서 글로벌 공급망이 매우 중요합니다. MSDS제출시 전성분을 제출하거나 수입의 경우 LOC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정보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을 준수하고자 해도 법을 준수하기가 불가능 합니다. - 유통과정(수입, 제조, 연구개발)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 국내 연구센터에서 국내에서 원료를 구입하여 제조한 샘플에 원료제품에서 기인한 영업비밀승인요구 대상이 되는 물질이 있을 경우, 제조된 혼합물의 영업비밀승인 유예기간이 2026년 까지로 명시된 개정 시행규칙이 아직 공포되지 않아, 샘플을 고객사에 납품할 수 없는 상태임. (시행규칙 공포될 때까지 본 샘플 제조 연기) · 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영업비밀승인대상 물질이 해외 원료사 물질로서 간접적으로 수입되는 경우, 해외 원료사 측에서 영업비밀승인 심사를 진행해줄 수 없어 샘플 수입 6개월 이상 지연됨. - 비공개 승인 심사 시 어떤 문제로 얼마나 지연이 되는지? (심사제도 자체인지 등): · 연구개발제품은 90% 이상이 1회성으로서 외부 유통없이 회사내 연구소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많고, 연구소 대 연구소로 제품의 이동이 이루어지므로 근로자에 대한 화학물질의 노출이 매우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제품내 유해성으로 분류되나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비공개 심사를 받는데 보통 1달 이상 소요되고 있어서 고객사와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연구개발 활동에 많은 지연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승인받는데 여러달이 걸리는 경우 연구개발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연구개발제품보다 소요시간이 더 긴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1회성이 대부분인 연구개발 제품의 MSDS적정성 평가를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잘모르겠고, MSDS적정성 평가의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개발제품의 비공개승인 심사를 위해서는 전성분을 제출해야하는데 전성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힘들거나 불가능합니다. · 연구개발제품이라서 내부 테스트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자료없음"이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UPDATE요청을 하거나, 왜 존재하지 않는지 소명하라고 요청하거나, 분류표시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자료가 부족한 경우 소명하라고 요청함 · MSDS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공개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음. MSDS 적정성 평가와 비공개승인은 다른 문제임에도 MSDS 적정성 평가로 인하여 비공개 승인 심사가 완료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고 있음 · 현재 대체물질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환경부의 총칭명 기준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음. · 비공개 승인 심사 담당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어떤 담당자는 승인을 내주고 어떤 담당자는 보안을 내림. · 비공개승인 심사 제도가 제품 별 영업비밀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Indirect sales로 수입되는 최종수입 제품의 원료에서 기인한 영업비밀승인대상 물질의 경우, 해외 원료 업체측에서 직접적으로 물질 자체에 대한 승인이 어려우므로, 해당 제품에 대한 비공개 승인 이행 자체가 매우 어려움. (이러한 경우, 매우 적은 양의 샘플 수입 시에도 해외원료 업체 측 등과 수입 이행을 위한 논의를 해야하므로, 최소 5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매우 적은 양의 샘플의 경우, 해외원료업체 측에서 도움을 주는 경우가 없어, 수입자체가 취소됨) · 현재 가상계좌로만 결제 진행이 가능한 상태라, 가상계좌를 그때그때 회사 구매 프로세스를 통하여 vendor code 등록 진행 후 납부하고 있는데, 계좌번호가 매번 바뀌다보니, vendor code 등록에만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2-3주 정도 소요되고 있음. 추가사항 - MSDS 심사제도와 관련하여 건의 드릴일이 있습니다. 공단측에서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서 기존 생산 제품에 대해서 톤수별로 유예기간을 법적으로 주셨습니다. 공급사는 이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사용자 (엔드 유저) 측에서는 유예기간없이 요청하십니다. 유예기간에 관한 기준을 좀 더 법적으로 명확하게 할수는 없을까요? 사용자 (엔드 유저) 측에 법적 유예 기간 고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경우, 대부분은 사용자측에서 요청시에는 유예기간과 무관하게 요청할수 있다고 답변하십니다.

- 연구개발 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한 비공개 승인
: 빠른 수급 대응을 위해서는 샘플 공급을 통해 연구개발이 원활히 진행이 되어야 하나, 비공개 승인 제출을 못하거나, 제출 이후 여러 번의 보완 단계 때문에 관련 sample 들의 공급에 차질
- 비공개 물질 승인 절차의 복잡성에 대한 어려움
: 비공개 물질 승인을 위해, 해당 물질이 함유된 (혼합)제품의 각각의 다른 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 전체성분 정보, 비공지성, 비밀유지성 등의 서류 및 data 입력을 요구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 보완 절차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되고 있음. 현재 해당 절차를 진행하다, 수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예, 2-3개월 여러 번의 보완사례로, 수입 중도 포기)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품질에 대한 과도한 적정성 평가 및 중복규제
: 물질의 정보보호 관련 신고 및 등록 제도는 이미 타 부처 (환경부 화평법의 신규물질 정보보호 제도 '화평법 제29조, 제30조 및 제45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자료보호 및 정보제공', 화학물질관리법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9-183호)에서 시행 되고 있음. 제도의 간소화 및 중복규제 완화 필요. 즉 한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 화평법에 따라 등록, 화관법에 따라 허가 및 신고, 산안법에 따라 MSDS 제출 및 승인... 중복 규제로 보여짐.
- MSDS 작성 및 제출시 제도상의 문제점과 기업의 문제가 되는 사례
1. 다국적회사의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주체가 국내가아닌 경우가 많아 개정법에대한 안내 및 시스템보완작업등에 추가소요시간이발생해예상보다 작업이오래 걸리는상황
2. 제출시 매뉴얼로추가 입력해야하는 부분이 많고, 적법한 자료뿐 아니라전성분에대한 확인절차를거쳐야해 특히국내 생산이아닌 수입제품의경우제출 중어려움이 많이발생하고 있음
3. 개정된산안법에 의거하여신규작성후 제출을진행 중1000톤이상의 경과시점이온 도래하는상황에서사용량에 따른차등경과시점이제대로 홍보되지않아 전제품에 대해제출된 자료필요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어려움이 있음
- 유통과정(수입, 제조, 연구개발)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어떤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1. MSDS 작성 및 제출자가법적으로수입제조자로 한정되어있어 국내위탁제조를한 경우 등에 대해보완이 필요함
2. 법에서는작성 및제출자가 수입제조자지만 현업에서는 구매자가 본인시스템에 등록된 최종 판매자가 작성한 서류를요구하는경우가 발생하기도해 영업에어려움이있음
- 비공개승인심사시어떤문제로알마나지연이되는지? 심사제도자체인식등..
1. 제출자료 및 검토세부사항에대해 안내가부족하여반려가 많이발생해 2-3달정도 소요된 경우가 있었음
2. 비공개승인을 진행 하더라도 규정된 총청명과 기재범위값 등이 예상보다 구체적이고 범위가 좁아 승인진행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있음

의견서

연구과제명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심사제도 발전방안 마련
의견서	폐사는 글로벌 화학회사의 한국지사으로써 국내에서 제조 및 수입 판매영업을 모두 영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MSDS 제출 및 작성, 비공개 승인심사와 관련하여 폐사에서 경험했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사에서는 연구개발용 제품의 경우 국내에 위치한 R&D 센터에서 해외에서 개발된 조성에 대하여 국내의 고객사와 협업하여 국내 적용성 테스트를 통해 국내 수입 혹은 국내 제조를 통한 공급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그런데 폐사에서 위와 같은 국내 도입 검토를 위해 개발품의 수입을 진행하던 중 다음과 같은 예시 상황을 수 차례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막대한 잠재적 영업 손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시] 원료물질의 MSDS를 통해서 1개 구성성분(이하 성분 A) 해당 물질의 총칭명과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은 확인하였으나 해당 성분의 구체적인 화학물질 정보 (정확한 화학물질명, CAS 번호 등)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리고, 해당 성분 A가 폐사의 개발품 내에서 유해성/위험성 분류가 되고, 한계농도(1% 또는 0.1%) 이상 함유되어 폐사 개발품(혼합제품)의 MSDS 제3항에 기재되어야 할 경우 폐사는 성분 A의 화학물질 정보 혹은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을 받은 후 대체자료를 폐사의 개발품 MSDS 제3항에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원료물질의 공급사에서는 보호 가능한 개별 성분의 구체적인 화학물질 정보를 하위사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성분 A는 국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 해당 개발 업무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예시상황은 결과적으로 통상 1개의 개발 프로젝트에서 보유한 최소 약 10억에서 30억 정도의 잠재적 사업가치의 손실과 함께 또한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화학제품의 국내 수입 혹은 국내 제조인력을 활용하여 제조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의 제조가 무산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의 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1. 원료물질의 공급사는 최소한 원료물질의 시장성 확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위사용자에 대한 화학물질 정보제공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부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확인되기 어려운 연구, 개발단계의 제품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2. 만약 위의 1과 같은 연구, 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한 비공개 승인 제외가 불가하다면, 산업계에서 상호간에 공유가 불가능한 화학물질 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제도의 도입이 그 대안으로써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료물질 공급자가 제출한 MSDS 번호 혹은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번호 등이 하위사용자의 MSDS 작성 및 제출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 2와 같은 조건도 원료물질에 대하여 국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주체와 의지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려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원료공급자의 유예기간이 톤수범위별로 물질 별, 공급자 별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효용성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와 완제품(혼합제품)의 유예기간 등의 외부적 변수가 동일해지는 2026년

	<u>까지는 완제품에 대하여 불완전한 원료물질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u> 회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활용 예로써 완제품의 MSDS 작성, 제출 시 하위사용자가 원료물질의 MSDS를 제출할 경우 통해 해당 원료물질에 대한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의무 등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제도적 개선은 국내 제조품 뿐만이 아니라 수입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그 제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의견서

연구과제명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심사제도 발전방안 마련
의견서	1. 연구개발물질의 비공개 승인심사제도: 배경: 연구개발물질이라면, 그 자체로서 비공개적인 성격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연구개발 물질의 유해성은 1) 이미 알려진 유해성을 가진 용제에 개발물질이 소량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대부분 신규 개발 성분에서 유해성이 발견되기 보다는 용제에서 유해성이 발견되므로, 기존 시장에 존재하는 (용제의) 유해성을 기반으로 기재해도 차이가 없습니다. 2) 혹은 물질 성분 100%가 새롭게 개발된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존재하는 물질의 구조를 일부 변형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신규 개발물질이므로 당연히 독성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존에 알려진 유사한 구조물질의 유해성을 참조하여 유해성 분류를 합니다. 연구개발물질은 신규 물질 혹은 new formulation 개발자와 사용자의 실험실 간에 샘플을 수없이 주고 받으며, 조정하고 피드백하며 사용자가 요구하는 적용 적합성에 맞추도록 개발되는 과정에 있는 물질입니다. 최종 구조식이나 함량이 아직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는 미확정 물질입니다. 문제점: 외국에는 규모가 작아도 제품의 품질은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가진 작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당장은 아무런 마케팅 보장이 없는데 성분을 우리에게 공개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MSDS상의 비공개를 위하여 OR을 세우라고 하면, 몇그람 샘플 한국에 보내는데 OR을 세울 리가 만무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한국 아니어도 이 첨단 물질 구하려고 줄을 서는 곳이 많은데 굳이 한국에 샘플을 보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갑자기 한국에 믿을만한 OR을 알 수도 없구요. 그래서 저희는 1년 이상 수입을 못하여 연기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풀더블 휴대폰에 들어가는 핵심 물질이었는데 1년 간 수입을 못해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개발자는 그 성분의 정확한 chemical identity를 비공개 하는 것이지, 유해성 분류를 비공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우려할 것은 없습니다.

외국 사례:

유럽과 미국은 연구개발용 신규물질은 어떤 절차도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연구 개발은 정부에 성분을 알리지 않아도 되고 Commercial이 되어야 정부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개선 제안:

연구개발 물질은 그 자체로 영업비밀이니 비공개승인신청 제도를 없애고 자율적으로 총칭명을 사용하게 했으면 합니다.

2. 연구개발물질의 비공개 승인심사 시 MSDS의 완전성 검토:

문제점:

비공개승인을 신청하려고 MSDS를 공단에 제출하면, MSDS의 완전성까지 검토 받습니다. 심지어 대량 사용하는 상업용 제품의 MSDS도 제출하기만 하면 완전성 검토없이 바로 제출번호가 나오는데, 비공개승인 대상은 총칭명이 적절하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심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MSDS의 전체 완전성까지 검토하는 것은, 시장 판매용 제품에 비해서 형평성이 없으며 오히려 역차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인지 검토 기간이 2주 걸리는데, 샘플 delivery가 2주 늦춰진다는 것은, 매일 새로운 전자 제품이 앞다퉈 출시 되는 전자 산업에서 많은 지연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개선 제안:

비공개승인심사 시 총칭명에 대한 심사만 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검토 기간이 2주씩 필요 없으며, MSDS의 완전성 검토는 상업용 단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연구진

연구기관 :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연구책임자 : 조기홍 (수석연구원,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 : 김현수 (책임연구원,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 : 최아름 (선임연구원,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 : 천지영 (연구원,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연구보조원 : 남해영 (선임차장,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연구보조원 : 김태경 (선임차장,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연구상대역 : 정수진 (과장, 화학물질평가1부)

연구기간

2021. 7. 27. ~ 2021. 11. 30.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21년도 위탁연구 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심사제도 발전방안 연구
(2021-산업안전보건연구원-814)

발 행 일 : 2021년 11월 30일

발 행 인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김은아

연구책임자 :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수석연구원 조기홍

발 행 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 소 :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전 화 : 042-869-0357

팩 스 : 042-863-9001

Homepage : <http://oshri.kosha.or.kr>

I S B N : 979-11-92138-38-1